

2020년 하반기

법무부 용역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한국법학원

2020. 12. 31.

연구 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책임자 : 안 문 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승 현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 선 미 (한국법학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1장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방법	3
제2장 우리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논의	4
I. 서설	4
II.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의 도입배경 및 시행 현황	4
1. 서설	5
2. 원격영상재판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이유	6
3. 원격영상재판의 적용 범위	7
4.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현황	9
5. 원격영상재판 시행에 대한 평가	12
III.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중단과 관련한 논의	14
1. 서설	14
2.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	16
(1) 원격영상재판과 구술심리주의	16
(2) 전자사법제도와 구술심리주의	18
가. 전자사법제도와 전자적 의사소통	19
나. 전자소송과 구술심리	21
다. 전자법정(e-Courtroom)과 전자법원(e-Court)	22
3.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기술적 한계	23
(1)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기술적 한계	24
(2)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정적 인식	25
(3)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요소	27
가. 공간적 요소로서의 원격(遠隔)의 개념	27

나. 원격영상재판기술	29
다. 전자사법제도와 온라인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31

제3장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현황 34

I. 서설	34
II. 미국	34
1. 도입배경	34
2. 관련 규정	37
3. 적용 현황	41
III. 독일	43
1. 도입배경	43
2. 관련 규정	46
3. 적용 현황	48
IV. 영국	49
1. 도입배경	49
2. 관련 규정	50
3. 적용 현황	51
V. 일본	53
1. 도입배경	53
2. 관련 규정	55
3. 적용 현황	60
VI. 중국	61
1. 도입배경	61
2. 관련 규정	62
3. 적용 현황	69
VII. 정리	71

제4장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방안 검토 74

I.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인식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및 의의 검토	74
II.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신설 규정 및 시행 요건·방식에 대한 검토	81
1. 신설	81
2.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위해 신설된 규정	82
(1) 민사소송법을 통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2016년 3월 29일)	83
(2) 민사소송규칙을 통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2016년 9월 6일)	84
(3)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년 7월 22일)	86
(4) 재난 상황에서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민사소송규칙(2020년 6월 1일)	87
3. 원격영상재판 시행 요건·방법	88
(1) 시행 요건에 대한 검토	88
가. 물적·객관적 요건	88
나. 인적·주관적 요건	90
(2) 시행 방법에 대한 검토	92
III.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소송 유형에 대한 검토	95
1. 신설	95
2. 원격영상재판에 적합한 소송의 종류 및 유형	96
(1) 민사비송사건의 경우	96
(2) 항소심의 경우	96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0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최근 코로나(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일상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나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었고, 학교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나,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해 기존의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심각한 경우, 지역 봉쇄나 식료품·의약품의 구매 외에는 이동 제한령까지도 시행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75%가 코로나(covid-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을 채택했으며, 이들 중 57%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OECD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디지털 경제 적응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 제도를 운용하여왔고,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 비율이 전체의 43%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전체의 4.5%에 머무르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covid-19)로 인해 올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어,¹⁾ 법원도 다른 직종이나 영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covid-19)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위기 시의 재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1) 허현호, “현직 판사 첫 확진…전국 법원 휴정 권고”, 뉴스투데이, MBC 뉴스 (2020. 8. 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82117_32531.html.

있다.

20세기 말부터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 증인 보호의 필요성, 소송절차의 간이화 등을 이유로 전자소송을 비롯한 원격재판 등이 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도 1995년 12월 6일 ‘원격영상 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 감정인 및 감정증인의 신문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 24일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8일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존의 법제들이 현재와 같은 코로나(covid-19) 상황을 대비하거나 예상하여 정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이 가능한 때에도 비대면이 가능한 업무를 활성화하거나 유지한다면,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 업무가 완전히 중단 또는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소송을 비롯해 원격영상재판의 도입근거 및 장점으로 언급된 소송 경제성, 증인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사실심 충실화 등과 같은 본래의 도입 목적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에는 이러한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 원격영상재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실시를 위한 우리의 영상회의기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었으며,²⁾ 1995년에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도입된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 및 인식의 한계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따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3면.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제2장), 코로나(covid-19)와 같은 위기나 비상사태를 통해 오히려 비대면·비접촉을 통한 업무의 지속 및 수행이라는 측면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가능성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제4장). 이러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이나 개선 방안은 외국의 경우(제3장)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에 관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작성하고자 하며, 기존의 단행본이나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재판예규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배경, 시행 현황, 중단 사유 등을 살펴보고, 외국제도와 관련한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보충적으로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³⁾의 자문을 통해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갑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연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성대규 박사.

제2장 우리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평가 및 논의

I. 서설

일반 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의 재택근무의 시행이 단지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인식의 변화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은 법원에서의 원격영상재판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처음 우리 사회에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2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화상전화, 화상회의, 화상수업과 같은 기술의 활용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약 25년 전에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한계와 인식의 한계가 현시점의 원격영상재판에서는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활용 방향이나 개선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에 시행된 우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이해를 위해 원격영상재판 관련 법규의 도입배경 및 시행 현황을 통해 원격영상재판을 평가하고(Ⅱ), 이어서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중단과 관련한 논의를 인식의 한계와 기술적 한계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Ⅲ).

Ⅱ.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의 도입배경 및 시행 현황

1. 서설

우리나라는 약 20세기 후반부터 국가 정보화를 위한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사법부도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⁴⁾ 구체적으로 법원은 1979년에 한국과학기술원에 사법 업무 전산화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1980년부터 대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고, 1986년에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민사소액사건의 전산화 처리를 위한 중앙정보처리방식의 도입 등의 법원 내부영역에서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부는 본연의 사법 업무 전반에 해당하는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산담당관실의 신설, 주전산기(主電算機; 호스트 컴퓨터)의 교체, 운영 등을 통해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될수록 중앙정보처리 전문 인력의 부족, 주전산기의 과부하 등의 문제를 비롯해 장애 발생 시의 법원 전체업무의 중단 가능성과 같은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⁶⁾ 이에 따라 1992년에는 주전산기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을 분산처리방식(distributed processing system)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시범적으로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선정하여 통신

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1면.

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1면.

6) 현재 사법 업무의 정보화는 재판사무시스템, 법관업무지원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1면).

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체제를 운영한 뒤 점차 해당 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 시작했다.⁷⁾

1995년 12월 6일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약 5년 동안 원격영상재판은 2,000건이 넘게 시행되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거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30일 법원에서 사실심리 절차의 충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실심 충실화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증인신문절차의 개선 및 현대화와 관련하여 원격영상재판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을 통해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이유(2), 원격영상재판의 대상(3), 시행 현황(4) 및 평가(5)를 통해 우리 원격영상재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원격영상재판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이유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3조를 근거로 ‘도서(島嶼) 및 산간벽지(山間僻地) 등 판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격오지 주민에게도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 9월부터 시·군 법원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관할 사건이 너무 적거나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지역의 주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이 공동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첨단통신장비에 의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

7)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1면.

8)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의안번호 141218) 심사보고서, 3면.

용하여 주민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영상재판제도를 기획하게 되었다.⁹⁾

1995년 10월 17일 정부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¹⁰⁾ 이를 바탕으로 1995년 12월 6일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특례법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서비스를 확충하려는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5년 12월 26일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인 2010년 3월 24일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통해 제327조의2의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 도입”과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의 “중계시설을 통한 감정인신문 및 감정증인신문 도입”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들 규정을 통해 증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¹¹⁾

3. 원격영상재판의 적용 범위

9)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의안번호 141218) 심사보고서, 3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6-127면.

10)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의안번호 141218) 심사보고서, 1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7면.

11) 해당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4장에서 살펴본다.

1995년에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조항(제1조), 정의조항(제2조), 위임조항(제8조)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은 5개로 볼 수 있다. 특히 원격영상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사건, 셋째,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첫째, 제1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과 관한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즉결심판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건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제한한 이유는 소송 가액이 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경우 영상재판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여진다.¹²⁾

둘째, 동조 제2호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감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까닭은 영상재판 도중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다.¹³⁾

12)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5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8면.

셋째, 동조 제3호 사건의 경우, 특별법 등에 의해 시·군 법원의 관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시·군 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석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도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한다.¹⁴⁾

그리고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제1항에서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서 계속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의 경우 원격지 법정을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으로 특정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동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으로서 당사자 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의 경우 원격지 법정을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특정하였다.¹⁵⁾ 그리고 동규칙 제2항에서 제1항 규정 외의 사건으로 동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현황

1995년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판사가 상주하는 법원과 판사가 비상주하는 법원 사이의 전용회선¹⁶⁾을 기반으로 하는 전송설비, 영상설

13)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5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9면.

14)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5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9면.

15)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9면.

16) 전용회선(專用回線)은 leased line; leased circuit, dedicated private circuit으로, 전기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주관청과의 임차 계약(전용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다지점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 통신 회선이며,

비, 음향설비 및 각종의 영상재판시스템을 비롯하여 재판 관련 사건 서류의 입력, 출력, 검색 등 전송 처리를 위한 사건서류전송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쌍방향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이 구축되었다.¹⁷⁾ 예를 들면 본법정인 경주와 원격지 법정인 울릉등기소 사이에는 전용회선이, 본 법정인 인제·양주군법원과 원격지 법정인 홍천군법원 사이에는 전용 회선절체장치¹⁸⁾가 각각 설치되어, 전용회선을 이중화함으로써 각각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또한, 원격지 법정인 홍천군법원과 울릉등기소에 출석한 당사자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본법정인 경주와 인제·양주군법원에는 판사를 위해서는 20인치 모니터를, 당사자와 방청객을 위해서는 29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었다.²⁰⁾ 그리고 재판 관계 서류의 전송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와 스캐너를 갖추고, 주민등록증이나 물증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뷰어 또한 설치되었다. 원격지의 법정에 설치된 시설과 본법정의 장비는 동일하지만, 원격지 법정의 법대 중앙에는 52인치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모니터의 화면에 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²¹⁾

2010년에 발의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

E1 전용회선은 유럽 디지털 전송규격회선으로 전송 속도 2.048Mbps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용어사전, <http://word.tta.or.kr/terms/terms.jsp>);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6면.

17)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8면.

18) 회선절체장치(回線切替裝置)는 line switching unit을 가리키며, 2개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시스템의 회선 장치 사이에서 회선이나 회선군을 절체하는, 즉,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중화하는 장치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용어사전, <http://word.tta.or.kr/terms/terms.jsp>);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6면.

19)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8면.

20)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8면.

21)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8면.

선의원 대표발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2월 6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된 횟수는 1996년 183건, 1997년 251건, 1998년 778건, 1999년 747건, 2000년 400건으로 조사되었으며,²²⁾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동안 총 2,359건으로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과 인제·양구군법원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사이에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인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통해 민사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즉결심판 또는 협의이혼사건을 대상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²³⁾

그런데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횟수는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앞서 언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의 검토보고서와는 총 건수가 다르긴 하지만, 법원별로 실시된 원격영상재판의 대략적인 횟수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 실시된 원격영상재판 총 158건 중 양구군법원이 21건(13.3%), 인제군법원이 96건(60.8%), 울릉등기소가 41건(25.9%),²⁴⁾ 1997년에 실시된 원격영상재판 총 434건 중, 인제군법원이 302건(69.6%), 양구군법원이 110건(25.3%), 울릉등기소가 22건(5.1%),²⁵⁾ 1998년

22) 정영진, “법원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법논집 37집, 2004, 33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9면.

23) 강민구, “한국형 전자법정 확충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547면.

24) 1996년에 실시된 원격영상재판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면, 민사사건이 총 123건으로 전체의 77.8%로, 소액심판이 116건(73.4%), 민사조정이 4건(2.5%),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이 3건(1.9%)으로 나타났고,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이 35건으로 22.2%를 차지했다. 인제군법원은 전체 소액사건 158건 중 92건이 원격영상재판으로 시행되었으나,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이용되지 않았고, 울릉등기소는 전체 원격영상재판인 41건 중에서 33건이 즉결심판이었다(강동범, “형사재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252-259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7면).

에 실시된 원격영상재판 총 412건 중, 인제군법원은 254건(61.7%), 양구군법원이 125건(30.3%), 울릉등기소 33건(8%)으로 나타났다.²⁶⁾

그리고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통한 비디오 등 중계 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제327조의2의)과 중계시설을 통한 감정인신문 및 감정증인신문(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약 2년 동안 원격영상증언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10여 건으로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5. 원격영상재판 시행에 대한 평가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초기에는 1997년의 251건에서 1998년의 778건으로 시행 횟수가 3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았고, 당시 연구 중에는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확대 또는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의 영상재판도입의 필요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25) 1997년의 원격영상재판 중 민사사건이 99.1%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소액심판이 425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97.9%, 이혼 및 화해사건이 5건으로 1.2%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사건은 양구군법원의 총 4건의 즉결심판만이 시행되어 0.9%이며, 울릉등기소에서는 한 건의 즉결심판도 원격영상재판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강동범, “형사재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252-259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7면).

26) 1998년에 원격영상재판으로 처리된 사건은 총 412건으로, 민사사건은 354건으로 총 85.9%를 점하였고 그중에서 소액심판사건이 330건으로 80.1%, 민사조정이 5건으로 1.2%, 기타 19건으로 4.6%이며, 형사재판은 총 58건으로 14.1%를 차지하였다(강동범, “형사재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252-259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7면).

27) 백주연, “50억 들였지만...실효성 없는 원격영상재판”, 서울경제, 2018. 9.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U7T2YHM>).

28)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9

그러나 울릉등기소의 경우에는 1998년 11월 관할이 포항지원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경주지원과의 원격영상재판 횟수는 월 5회 미만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고, 1998년 11월 이후 포항지원으로 관할이 변경된 후에도 설비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1999년 3월 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²⁹⁾ 1995년 법률 제정으로 의욕적으로 시작된 원격영상재판 시행의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⁰⁾

더구나 홍천군법원과 인제·양구군법원 간의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의 경우는 과도한 운영비 지출,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장비의 설치나 준비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1년 4월부터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³¹⁾

그리고 1995년 특례법의 제정이유 중 하나였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요소가 우리 법정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2001년 이후의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통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시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상회의기술의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과 이후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원격영상재판이 거둔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³²⁾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통해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제327조의2의)과 중계시설을 통한 감

면.

29) 정영진, “법원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법논집 37집, 2004, 33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9면.

30) 강동범, “형사재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252-259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7면.

31) 정영진, “법원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법논집 37집, 2004, 33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9면.

3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139) 검토보고서 3면.

정인신문 및 감정증인신문(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이 가능함에도, 약 2년 동안 10여 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법원은 증인, 감정인 등의 원격영상신문 절차를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525개 법정과 72개 증인실에 웹 카메라 등 법정용 영상장비와 TV,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축에만 49억 원을 소요했으며, 해당 장비들은 노후 문제로 인해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은 최소 3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³³⁾

Ⅲ.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중단과 관련한 논의

1. 서설

앞서 우리 사회에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살펴 보았는데, 이와는 달리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사법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사법부와 비교해도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원격영상재판을 외국에 비해 다소 시기상조라고 여겨질 정도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하여 기술적, 재정적 이유로 인해 현재에는 거의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재시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1995년 당시의 국내 전자사법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가능성의 문제를 단순히 단지 기술적 차원에 한정해서만 논의할 수는 없다.³⁴⁾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진행

33) 백주연, “50억 들였지만...실효성 없는 원격영상재판”, 서울경제, 2018. 9.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U7T2YHM>).

형일 수밖에 없어서 완벽한 기술을 기반으로만 전자사법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³⁵⁾ 오히려 기술의 발전수준 그 자체보다는 첫째,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이라는 재정적인 문제, 둘째, 원격영상재판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질감, 셋째, 원격영상재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전역적인 정보통신망의 확보, 소프트웨어의 개발, IT-교육 및 활용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³⁶⁾ 또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은 이를 접하게 된 일반 국민이 가진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영상회의기술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원격영상재판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증인신문이 적은 민사소송의 특성과 법관들의 비선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원격영상신문만 허용되고 재판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한 예산 대비 제도의 활용성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³⁷⁾ 그리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비판이 직접 제기되기도 했는데, 차성안 판사(수원지법)는 “영상재판은 출석의 편익을 제외하면, 일선 판사들이 재판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판사를 만나 이야기

3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8면.

3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8면.

3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Britz는 ① 기술적 준비, ② 소프트웨어 확보, ③ 표준화, ④ 조직, ⑤ 재정, ⑥ 이용자의 수락 의사와 같은 6가지 전자사법제도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8면).

37) 백주연, “50억 들였지만...실효성 없는 원격영상재판”, 서울경제, 2018. 9.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U7T2YHM>)

를 듣는 과정에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³⁸⁾

결국, 우리 사회에서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논의는 첫째, 도입 원격영상재판 도입 당시의 기술 수준, 둘째,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전자사법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2), 이어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3). 이러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기술적 한계 및 인식의 한계에 관한 논의는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와도 연결된다.

2.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

(1) 원격영상재판과 구술심리주의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어쩌면 기술적 한계라는 측면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기술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는 원격영상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앞서 살펴본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부정적 인식과도 연관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민사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구술심리와 재판의 적정성과도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민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이 아닌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별도로 발의한 이유를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의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라는 규정에서 찾기도 한다.³⁹⁾ 그리고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38) 백주연, “50억 들였지만...실효성 없는 원격영상재판”, 서울경제, 2018. 9.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U7T2YHM>)

39)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7

발의할 당시에 원격영상재판으로 인해 재판이나 법정에 대한 존엄·재판에 대한 신뢰 저해에 대한 우려 또는 영상재판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이나 즉결사건과 같이 신속이 요구되는 절차로 한정하였다.⁴⁰⁾

법원조직법의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구술심리주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구술심리주의임에도, 실제 실무에서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에 대해서 서면을 구두로 진술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⁴¹⁾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술심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첫째, 민주주의 하의 사법적 기능, 둘째, 판결의 중요성과 법관의 고립 방지, 셋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 대한 절차 참여라는 기회의 보장과 이의 보장을 통한 만족감이라는 기능이 구술심리주의에 있다고 본다.⁴²⁾ 특히 첫 번째 기능은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⁴³⁾ 이에 대해서 구술심리가 서면심리보다 재판 시간이 더 걸리며, 소송관계인에게는 구술심리가 오히려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⁴⁴⁾ 구술심리가 그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 주는 형식적

면.

40)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3면;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7면.

41) 이연갑, “구술심리 소묘”, 안암법학 제24권, 2007, 57면.

42) 이연갑, “구술심리 소묘”, 안암법학 제24권, 2007, 57-58면.

43) 이연갑, “구술심리 소묘”, 안암법학 제24권, 2007, 58면.

44) 쌍방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대리된다면 구술변론보다 서면에 의한 공방이 보다 쉽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심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인 형태의 구술변론을 빈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구술심리주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⁴⁵⁾

사실상 소송절차에서 소송당사자나 소송관계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당사자와 대화나 토론을 한다고 하여 공정한 판결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적 만족감의 충족만으로는 재판의 이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⁴⁶⁾ 결국에는 구술심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신속한 심리가 아닌 충실한 심리일 것이며, 이는 서면심리의 이상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술심리만을 고집한다거나 서면심리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⁴⁷⁾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제보다는 심리 자체의 충실화를 통한 판결에 대한 신뢰나 재판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자사법제도와 구술심리주의

앞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 대한 원인이 구술심리주의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서면심리와 상반된 의미에서의

되는 측면이 있다(한충수,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 민사소송 제15권 제1호, 2011, 319면 이하).

45) 김홍엽,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259-260면.

46) 김홍엽,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260-261면.

47) 말로 하는 재판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인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인가, 이들 사이에 어느 측면을 강조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막연히 둘을 조화하여야 한다는 관념만으로는 구술심리주의의 현실화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로 하는 재판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서면을 단순히 반복하여 진술하든지, 이를 요약하여 진술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로 하는 재판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말로 보다 신선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글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김홍엽,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262면).

구술심리는 오히려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사실상 원격영상재판은 사실상 전자사법제도 내의 하나의 단계로써, 전자사법제도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첫째, 전자소송, 둘째, 전자법정, 셋째, 전자법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원 내부 영역에서 시작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토대로 하여 외부영역의 정보화를 의미하는 전자소송의 발현을 통해 법원 내부 및 외부영역에 대한 정보화의 가속화됨으로써 전자법정의 구축이 가능해진다.⁴⁸⁾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자사법제도와 전자적 의사소통(가), 전자소송과 구술심리(나) 및 전자법정(e-Courtroom)과 전자법원(e-Court)(다)을 통해 전자사법제도 내에서의 구술심리를 검토한다.

가. 전자사법제도와 전자적 의사소통

전자사법제도(e-Justice)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법현대화의 핵심적 내용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가 사법부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사법부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가리킨다.⁴⁹⁾ 이러한 전자사법제도의 목표는 사법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재판의 효율성, 투명성 및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신속화와 효율성 증진,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구술심리주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48) 전자법정의 기술적 집약은 원격영상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3면).

49)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9면.

다.

더구나 전자사법제도가 관계인 상호 간의 소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전자적 의사소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때 전자적 의사소통은 사법절차에 관여된 모든 자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의사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한 사법행정절차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각종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 신청, 송달되고 열람, 변론, 독촉절차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법률적 소통, 접속 및 교류 관계를 말한다.⁵⁰⁾

이와 같은 전자적 의사소통은 법원 내부영역⁵¹⁾과 외부영역⁵²⁾의 정보화에서 모두 발견되기 때문에 전자사법제도와 동의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전자적 의사소통은 전자사법제도와 동의어가 아니라 전자사법제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및 하위개념이며, 전자사법제도는 법원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집합개념 및 상위개념에 해당하게 된다.⁵³⁾

50)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0면.

51)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는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 효율화를 의미하는데, 사법 행정상의 각종 문서, 기록 등을 전자적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저장 및 접근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기록이나 문서의 장소적 제한이란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관계인 상호 간의 소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Uwe Berlit, "E-Justice - Chancen und Herausforderung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JurPC Web-Dok. 171/2007, Abs.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1면.

52)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는 각종 절차 관계인들과의 전자적 소통의 증진을 의미하며, 특히 외부영역의 정보화는 내부영역과의 결합 하에서, 다시 말해 내부영역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Uwe Berlit, "E-Justice - Chancen und Herausforderung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JurPC Web-Dok. 171/2007, Abs.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1면.

53) 법원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의 정보화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Uwe Berlit, "E-Justice - Chancen und Herausforderung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JurPC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정보화 사업 역시 전자적 의사소통에 집중되어있는데, 이는 특히 대표적인 재판사무시스템인 민사소송절차, 즉 민사시스템에서 잘 나타난다.⁵⁴⁾ 민사시스템은 소장의 접수, 재판의 준비, 소송의 진행, 각종 송달, 판결, 상소 및 사건의 종결, 기록보전의 각 절차에서 해당 소송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문서의 전자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문서가 정형화 및 표준화됨에 따라 전자사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소통의 발전은 소송 진행방식에 있어서 전자소송으로 연결된다.

나. 전자소송과 구술심리

전자소송(e-Litigation)은 ① 각종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제출 및 송달되며, ② 법원은 해당 기록을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관리하여, ③ 소송당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소송의 도입은 2003년 대법원 사법 전자 파일링 구축계획의 수립 이후에, 2010년 3월 24일의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법은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Web-Dok. 171/2007, Abs.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1면.

54) Uwe Berlit, “E-Justice - Chancen und Herausforderung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JurPC Web-Dok. 171/2007, Abs.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1면.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 문서의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건을, 법원에게는 접수되는 소송서류를 전자화하여야 하는 사건을 전자소송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⁵⁵⁾ 2010년 4월에는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2011년에는 민사전자소송이 실시되었으며, 2013년에는 가사 및 행정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사건, 2015년에는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되었다.

다. 전자법정(e-Courtroom)·전자법원(e-Court)과 구술심리

전자법정⁵⁶⁾은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법정을 말한다.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전자적 의사소통이 사법행정 및 소송절차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이 문서를 단순히 전자문서화함에 그치지 않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각종 전자문서 정보를 스크린이나 모니터로 열람하고 녹음, 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를 청취·시청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일정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 물적 기반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전자소송이 이른바 전자법정(e-Courtroom)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소송은 단계별로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서류의 제출과 기록열람 및 송달(e-Filing), 재판업무의 전산화와 전자문서의 기록·정리 및 각종 법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e-Casemanagement) 및

55)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2, 8면.

56) 전자적 법정 변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실무편람, 2012, 3면).

전자문서에 대한 용이·신속한 열람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갖춘 전자법정(e-Courtroom)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⁵⁷⁾ 그러므로 전자법정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형태나 내용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⁵⁸⁾

전자소송의 발전이 전자법정으로 귀결된다면, 결국 전자법원은 전자사법제도의 외부영역에서의 정보화라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장기적 사법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자법원을 향한 로드맵(Roadmap to e-Court)’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가지 요소는 법원 포털, 사법 정보 공유센터, 전자소송, 사법 전자문서 보관소, 전자법정임을 밝히고 있다.⁵⁹⁾

정리하자면, 전자사법제도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첫째, 전자소송, 둘째, 전자법정, 셋째, 전자법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원 내부영역에서 시작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토대로 하여 외부영역의 정보화를 의미하는 전자소송의 발전을 통해 법원 내부 및 외부영역에 대한 정보화의 가속화됨으로써 전자법정의 구축이 가능해진다.⁶⁰⁾ 전자법정의 기술적 집약이 원격영상재판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원격영상재판은 사실상 전자사법제도 내의 하나의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로, 결국 서면심리와 상반된 의미에서의 구술심리주의가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기술적 한계

57)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3면.

58) 안경옥,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004, 283면.

59) 법원행정처, 사법부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 2008, 226면.

60)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3면.

(1)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기술적 한계

1995년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의 시행이 2001년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법원 간의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역시 과도한 운영비 지출, 장비의 노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⁶¹⁾ 비록 영상재판을 시행하는 법원과 사건 유형이 제한적이었고,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1995년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원격영상재판의 시행에 대해서 당시의 도입이 매우 파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⁶²⁾ 이는 미국의 일리노이주 법원이 1972년 보석심리절차(bail hearings)에서 최초로 영상전화(videophone)를 시도했음에도, 정작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원격증인신문은 1996년에 이루어졌고, 2002년이 되어서야 연방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우리의 원격영상재판이 시행 초기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외부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⁴⁾ 그럼에도, 2000년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양방향 TV 기술, T1급 이상의 초고속 전송망 등의 발전, 다화면 TV 등의 등장으로 인해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어, 기술 수준만의 문제가 당시 원격영상재판 시행의 중단

61) 정영진, “법원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법논집 37집, 2004, 33면.

62)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27면.

6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Briefing Papers: Videoconferencing,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1995 (<http://cdm16501.contentdm.oclc.org/cdm/ref/collection/tech/id/532>);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66-69면.

64)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0면.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⁶⁵⁾

오히려 기술적인 요소에 따른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운영비 지출, 장비의 노후화라는 다른 문제를 초래했고, 이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구축한 지 불과 5년 만에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의 급격한 기술변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 시점인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컴퓨팅 환경이 급변하던 시기로, 이러한 급격한 기술적 변화를 원격영상재판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⁶⁶⁾

또한, 당시 원격영상재판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⁶⁷⁾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의 장점이 소송비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었음에도, 당시에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관련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⁶⁸⁾

(2)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정적 인식

65) 강민구, “사이버스페이스와 사법부”,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 317면.

66)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0면.

67)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0면.

68)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130면.

1995년 특례법의 시행 실패의 가장 직접적인 외부적 원인이 기술적 수준의 문제였다면, 이러한 낮은 기술 수준은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달리 말하면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종전 세대의 거부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이전 세대의 거부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⁹⁾

원격영상재판법이 제정된 1995년 당시의 정보통신기술 상황을 살펴보면, PC에 의한 통신의 경우 PC 기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 58%가 486급, 약 15%가 386급, 약 16%가 586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용 서비스 중 34%는 공개자료실, 약 25%는 동호회 및 포럼, 약 11%는 게시판, 약 6%는 대화방, 약 5%는 전자우편으로 나타났다.⁷⁰⁾ 당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사 표현 설문에서는,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데 PC통신이 편리한가”라는 질문에 약 36%가 “대체로 그렇다.”, 약 30%가 “그저 그렇다.”, 약 15%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⁷¹⁾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1995년에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이 일반 재판절차와 동일하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인 인식이나 신뢰가 일반 국민에게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⁷²⁾

실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메일의 사용에 대해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세대가 상당수 존재했음을 참작한다면, 당시 시행된 원격영상재

69) 강민구, “사이버스페이스와 사법부”,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 317면.

70) 해당 통계분석은 ㈜한국PC통신 하이텔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1995년 11월 20일부터 1995년 11월 23일까지 4일간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 및 처리되었다(한국정보문화센터, PC 통신 이용자 행태 및 태도조사, 1995. 12.).

71) 한국정보문화센터, PC 통신 이용자 행태 및 태도조사, 1995. 12.

7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60면.

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거부감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극복이 어려운 요소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⁷³⁾

(3)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요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성, 투명성 및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자사법제도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필요로 한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시작된 사법 정보화는 전자소송의 시행 및 확대를 거쳐 전자법정의 실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자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종이 문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증거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이라는 물리적 한계의 극복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수많은 정보를 다양한 물리적 공간으로 투영시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자적 형식의 자료를 열람하고 한방향으로 청취하는 차원을 넘어 실시간(realtime) 양방향(two-way) 동영상을 통해 법정에 전자적 출석(electronic appearance)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는 사법 정보화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전자법정의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⁴⁾

가. 공간적 요소로서의 원격(遠隔)의 개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원격영상재판”은 당사자 등

73) 강민구, “사이버스페이스와 사법부”,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 333면.

7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4면.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원격(遠隔)”이란 “시간 및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명사로 보통은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원격”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떨어져 있는 대상이나 객체에게 행동, 상태 및 성질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어법으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원격조종이나 원격유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동작시키는 것을 말하며, 원격작용이란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직접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⁷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격재판의 개념은 먼저 공간적 차이를 개념요소로 함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최소한 둘 이상의 주체를 전제로 함이 나타난다. 그러나 재판의 주체가 공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본래의 재판절차에서도 발견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판절차는 본질적으로 원격에 놓여있는 소송관계인 상호 간에 이뤄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원격, 다시 말해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인을 특정 공간으로 “출석”시킴으로 원격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렇게 특정된 공간이 바로 법정(courtroom)인 것이다.⁷⁶⁾

그렇다면 원격재판은 원격의 소송관계인들이 공간적으로 확정되어있는 관할 법원의 법정에 물리적으로 직접 출석(physical presence)하

7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4-25면.

7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5면.

지 않고 원격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기술, 즉 영상과 음성의 실시간 전송 기술이 재판절차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원격재판이며, 그렇다면 원격영상재판이란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재판절차가 아니라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등에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격영상재판은 전자소송이나 전자법정의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 정보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⁷⁾

또한, 원격영상재판에서의 원격 개념은 관계인과 법정이 얼마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격영상재판의 효과가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는 재판절차에 의하더라도 법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법원 법정 이외의 장소일 것이 요구된다.⁷⁸⁾ 그러므로 본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법정이나 다른 법원 증언실, 영상회의실 등은 물론 본법원이라도 법정 이외의 본법원 내 증언실에서 증인신문이 영상회의기술에 의해 본법원 법정으로 증계되는 경우 이를 “원격”상태로 보게 된다.⁷⁹⁾

나. 원격영상재판기술

다소 관념적인 논의일 수 있으나 공간적 차이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면 법정 내에서도 소송당사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적 차이를 극복

77)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5면.

7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5면.

79)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5-26면.

하는 기술의 사용도 원격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원격재판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영상재판의 원격 개념에 대한 적용 범위가 적어도 법정 이외의 장소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격영상재판에 투입되는 기술이 극복해야 할 공간적 차이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전달이나 기록제시가 보통의 재판절차에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이용하는 수단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다른 어떤 기술적 수단을 통해 증개되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⁸⁰⁾

이러한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가 전달되고 기록이 제시될 수 있는 통신(telecommunication)기술⁸¹⁾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은 기존의 통신 개념을 넘어 타 개념과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신적, 시각적, 영상적 의미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중계”하는 방송(broadcast)⁸²⁾과 “전송인과 수신자 사이의 정보와 의사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의 개념이 합쳐진 방송 통신 또는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의 발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렇게 융합된 방송통신기술 중에서 전통적인 통신영역에 유사한 경우가 영상회의

80) 다시 말해, 원격영상재판에서의 “원격” 개념이 전제하는 공간적 차이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앰프, 마이크로폰 또는 스피커 등을 이용해 음성을 증폭시키거나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한 정지된 화상을 확대투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6면).

81) 통신의 사전적 정의는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해당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송인과 수신인 사이에 정보와 의사가 기술적 수단에 의해 공간적 차이를 넘어 전달, 교환된다는 점이고 그 외 수단적 요소는 예시적, 부수적 의미를 가진다. “우편, 전신 또는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추가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6면).

82) 방송의 개념요소는 매우 다양하나 원격영상재판에서는 특수한 형식의 통신으로도 정의된다(Frank Fechner, Medienrecht, 13. Aufl., 3. 18).

(videoconferencing)이다.⁸³⁾

따라서 앞서 언급한 ‘원격’과 ‘영상회의’에 기반한 원격영상재판은 원격의 소송관계인들이 확정된 물리적 공간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정신적 의미와 내용을 담은 음성 및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출석한 것처럼 보아 진행되는 재판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라는 원격영상재판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영상통화나 일반적인 화상회의와 비교할 때, 재판절차는 매우 특수한 절차이므로 이에 필요한 영상회의기술인 원격영상재판기술 역시 일반 기업체나 행정부 등의 화상회의에서 투입되는 영상회의기술과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원격영상재판에서의 고려사항은 현대의 기술 수준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이들 기술이 어떻게 투입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⁸⁴⁾

다. 전자사법제도와 온라인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최근 온라인분쟁해결(ODR)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은 종전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⁵⁾ 온라인분쟁해결(ODR)이 등장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전자사법제도에

83) Benjamin Glunz, Psychologische Effekte beim gerichtlichen Einsatz von Videotechnik, 2012, p. 11.

8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26면

8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2면 이하.

서도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나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는 등의 변화와 발전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전자사법제도에 포함된다는 점은 원격영상재판과 동일하지만, 온라인분쟁해결(ODR)제도는 원격영상재판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전자사법제도의 전개 방향은 이제 소송관계인 전부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전자법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법정은 사이버 법정(Cyber Court) 또는 가상법정(Virtual Courtroom)으로도 표현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온라인 법정(Online Court)이라는 표현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분쟁해결(ODR)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분쟁해결,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있어 전자적 소통수단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왔다.⁸⁶⁾ 온라인분쟁해결(ODR)의 역사는 물론 실제 현황을 통해서도 종전에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라고 하는 조정이나 중재 등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결국 온라인분쟁해결(ODR)은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⁸⁷⁾ 그렇다면 온라인분쟁해결(ODR)은 ‘온라인’과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라는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⁸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온라인 법정에서는 판사나 소송대리인, 양

86) 정영수, 온택트(Ontact) 시대와 민사재판에서 ODR의 활용 가능성,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2020, 147면 이하.

87)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2면 이하.

88)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ODR 또한 흔히 생각하는 인터넷 상의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뿐만 아니라 그 외의 무수한 절차들을 지칭하게 되면서 견해에 따라서는 ODR의 개념이 너무 과잉 사용되고 있다고도 하고 심지어 ODR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ODR 기술(onlin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Julia Hörnle, “Online Dispute Resolution - The Emperor’s New Clothes? Benefits and Pitfall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http://www.bileta.ac.uk/02papers/Hörnle.html>);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12면 이하.

당사자나 증인은 온라인 법정에서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절차가 강구될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과 같은 비디오회의시스템을 통해 화상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지만 이러한 대면조차 없이 웹 컨퍼런스나 포럼을 통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온라인분쟁해결(ODR)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재판절차와 구별되지만 온라인분쟁해결(ODR)의 관념은 전자사법제도, 사법정보화 등을 통해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으로 ODR의 관념이 확대된 사례는 본격적인 이용보다는 대개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소액사건, 영국의 MCOL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온라인에 의한 절차 진행이 개시되었고,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는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정이 대표적이다.⁸⁹⁾

최근 온라인분쟁해결(ODR)은 첫째, 국제규범 형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분쟁해결(ODR)이 본격적으로 국제거래에 통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며, 둘째, 특히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접근성을 중시하는 전자정부의 출현 및 발전을 위해 온라인분쟁해결(ODR)을 채택하기 시작하였고,⁹⁰⁾ 셋째,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온라인분쟁해결(ODR)의 관념을 수용하고 있는데, 온라인분쟁해결(ODR) 초창기에는 온라인 ADR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많은 부분에서 ODR로 대체되고 있다.⁹¹⁾

89)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153면.

90) 우리의 경우 행정심판이 시행되고 있다(<https://www.simpan.go.kr>).

91)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29면.

제3장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현황

I. 서설

우리 사회에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한 해는 1995년이나,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준비를 거쳐 이미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나 이제 단계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초의 원격영상재판은 1998년에 시행되었으나,⁹²⁾ 민사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미국(Ⅱ), 독일(Ⅲ), 영국(Ⅳ), 일본(Ⅴ), 중국(Ⅳ)의 원격영상재판제도를 살펴본다.

Ⅱ. 미국

1. 도입배경

미국에서 사법 영역에서 정보의 전산화가 추진된 최초의 사례는 1970년대 중반의 ‘연방사법부 자동화 프로그램(Federal Judiciary’s Automation Program)’으로 볼 수 있는데,⁹³⁾ 해당 프로그램은 사법행

92) 프랑스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처음으로 실시된 곳은 파리에서 4,600km 떨어진 캐나다의 동쪽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 생피에르(Saint-Pierre)섬과 미끌롱(Miquelon)섬을 관할하는 생피에르와 미끌롱 법원이다. 생피에르와 미끌롱 법원의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법관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관에 대한 제척이 요구되자, ‘마요뜨(Mayotte), 생피에르, 미끌롱 및 해외 영토의 사법조직에 관한 1998년 8월 20일 법규명령’을 근거로 원격영상재판이 해당 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97면).

정업무의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 내부영역에서의 정보화라고 볼 수 있다.⁹⁴⁾ 이러한 자동화 프로그램은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송무관리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는 통합송무관리시스템(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ICMS)으로 개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사법자동화자금법(Judiciary Automation Fund Act)이 제정되어 중·장기적 사법 정보화 정책이 수립, 시행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연방법원장기발전계획(The Long Range Plan for the Federal Courts)을 통해 법원 업무의 장기적인 기술 도입과 통합이 논의되었다.⁹⁵⁾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에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종합적인 사법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원은 최근 기술을 사법행정업무에 도입하여야 하며, 특히 네트워크 컴퓨터가 소송관계인과 법원 간에 소송자료를 교환하고 실시간 영상회의기술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출석과 심리가 허용되는 시스템을 갖춘 전자(electronic)·가상(virtual) 법원을 제안하였다.⁹⁶⁾

1971년 Virginia 주 Williamsburg에서 국립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는 법원행정을 지원·연구하고, 각종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창립되었는데, 이외에 전자법정의 구현과 발전적 구상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법정과 관련해 국립주법원센터(NCSC)는 1987년부터 2년마다 법원전문기술컨퍼런스

93) J. Owen Forrester, The History of the Federal Judiciary's Automation Program, American University L. R. 1996. 6., 1483면 이하; 노태약, “미국 연방법원의 자동화·전산화 추진 현황”, 재판자료-정보화와 재판실무 제79집, 1998, 439면.

9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3면.

95)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1995. 12. 15.

96)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1995. 12. 15.; 이는 전자법정과 그 발전적 형태인 원격영상재판의 도입에 대한 계획으로 해석된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4면).

(Court Technology Conference: CTC)를 개최하여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소개하며 최신 기술의 접목 가능성, 실험적 사례,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⁹⁷⁾ 최근에는 2019년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Louisiana주의 New Orleans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들 회의는 온라인으로 동시 방영되었다.⁹⁸⁾

더구나 국립주법원센터(NCSC)는 1993년 9월 13일에 William & Mary 로스쿨과 함께 ‘21세기 법정 프로젝트(Courtroom 21 Project)’라는 세계 최초의 전자법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재판절차에서 전자정보기술을 투입하여 법정에서의 사무자동화, 신속한 사건처리, 비용절감, 증거현출에 있어 최신 기술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⁹⁹⁾ 21세기 법정 프로젝트의 물적 설비의 내용은 멀티미디어기술의 활용을 위한 영상설비, 음향설비의 구축으로, 특히, 영상시설은 단순한 화상의 투영을 넘어 원격영상연결을 통한 다(multi)화면 동시 방영 TV를 설치하여 전체나 부분 화면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전자법정에서의 재판절차, 나아가 원격영상재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기록의 즉시 조회가 가능하며 각종 증거의 현출을 위한 디지털 실물화상기, 전자철관 등이 설치되었다.¹⁰⁰⁾ 이 프로젝트

97)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3면.

98) <https://courttechnologyconference.org/>.

99) 특히 이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William & Mary 로스쿨에 최신의 물적, 인적 설비를 도입하여 모의재판의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좀 더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경옥,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004, 290 이하; 강민구, “한국형 전자법정 확충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546면 이하).

100) 안경옥,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004, 290 이하.

는 재판절차에 전자정보기술을 투입하여 법정에서의 사무자동화, 신속한 사건처리, 비용 절감, 증거 현출을 위한 최신 기술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추구하였다.¹⁰¹⁾ 이와 같은 21세기 법정 프로젝트는 이후에 각국의 사법부가 주목하는 사법 현대화, 사법 정보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¹⁰²⁾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전자사법제도는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를 시작으로,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 전자적 의사소통, 전자소송, 전자법정 및 원격영상재판 단계에 이르는 순차적인 발전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³⁾

2. 관련 규정

미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원격영상재판 기술을 사법절차에서 이용하였다고 보는데, 원격영상재판기술을 투입한 최초의 사례로는 1972년 Illinois 주 Cook County의 순회법원이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심리절차(bail hearings)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¹⁰⁴⁾ 마찬가지로 1974년 Philadelphia 시의 15개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쇄회로 TV에 의한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s)와 보석심리절차가 시행되었다.¹⁰⁵⁾ 폐쇄회로 TV로 화상과 음성을 전송하는 방식은 경죄

101) 강민구, “한국형 전자법정 확충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12., 546면 이하.

102) Tammi Flythe, “The Courtroom 21 Project: A Light at the End of the Legal Tunnel”, <http://technology.findlaw.com/articles/01057/009999.html>; 강민구, “한국형 전자법정 확충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12., 546면 이하.

10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6면.

104) Diamond Locke E. Bowman, Manyee Wong, Matthew M. Patton, “Efficiency and Cost: The Impact of Videoconferenced Hearings on Bail Decis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100 Issue 3 Summer, pp. 877-87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6면.

에 대한 공판전 절차, 특히 위와 같은 보석심리절차나 기소인부절차 및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에서 피의자를 호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¹⁰⁶⁾ 이러한 경찰서의 폐쇄회로 TV의 이용은 쌍방향 폐쇄회로 TV에 의한 변호인 접견의 논의로 발전되었다.¹⁰⁷⁾

이후 민사사건에 대해 연방민사소송규칙과 각 주 법에 따라 해석상, 또는 명문의 규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멀티미디어 기술의 일반화와 보급에 발맞추어 1996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실시간 영상전송에 의한 증언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¹⁰⁸⁾ 또한, 재판절차에서의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한 원격영상재판은 민사사건에서는 주 법원은 물론 연방법원 차원으로 확대되었다.¹⁰⁹⁾

민사재판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3조 제(a)항으로, 동규정(Rule 43. Taking Testimony)은 “연방 법령, 연방증거규칙, 민사소송규칙, 대법원에 의해 채택된 다른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증인의 증언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절한 보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장

105) 황찬현, “원격영상재판”, 재판자료-정보화와 재판실무 제79집, 1998, 82면;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64면.

106) William A. Geller, “Police Videotap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Issues and Practices, 1992, 1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7면.

107) Warren Moy, “Use of Interactive CCTV to Provide Legal Counseling Services in Philadelphia”, MITRE Technical Report, 1973.

10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7면.

109) WM. & MARY BILL RTS. J. 887, 2004, pp. 913-914; Marc Chase McAllister, “Two-Way Trial Testimony and the Confrontation Clause: Fashioning a Better Craig Test in Light of Crawford”, 34 FLA. ST U. L. R., 2007, p. 835.

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개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원격지에서의 증언을 허용하였다.

즉, ① 절박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 ② 정당한 이유(good cause), ③ 적절한 보호 수단(with appropriate safeguards)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격영상재판에 출석할 것에 동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는 법정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부받아 원격영상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 제(a)항의 “절박한 상황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절한 보호 수단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증언을 허용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또는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1988년 Washington 주의 서부지방법원은 ‘절박한 상황’과 관련하여, 첫째, 피고가 증인에게 가하는 압력, 둘째, 다수 당사자이거나 다수 주가 관련되는 등 사건의 복잡성, 셋째, 실제 증인에게 가해지는 불편함과 상충하는 피고가 추구하는 명백한 전략적 이익, 넷째, 피고에게 진정한 불이익이 없을 것, 다섯째, 다수의 주가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 정리하였으며,¹¹⁰⁾ 위 5가지 요건은 In re Vioxx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사건¹¹¹⁾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¹¹²⁾ 또한, 1996년 민사소송규칙 개정검토위원회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

110) MDL No. 551, 1988 WL 525314 (W.D.Wash.8/9/1988).

111) 439 F.Supp.2d 640(E.D.La 2006).

112) 김유진, “미국의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에 관한 조사”, 해외사법자료, 2015, 3면.

고, 질병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증인이 법원에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외부 지역에서 증언이 가능할 때”로 해석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³⁾

이와 관련하여, 2000년 *Beltran-Tirado v. I.N.S.* 사건에서는 Missouri에 사는 증인이 San Diego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어려움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였으나,¹¹⁴⁾ 2003년의 *Gulino V. Board of Educ. of City School Dist. of City of New York* 사건에서는 증인이 본인의 거소인 California에서 증언을 위해 New York 시 법원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화나 원격영상회의기술에 의한 증언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¹⁵⁾

결국, 원격영상기술의 투입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순 편의 등의 이유만으로 원격영상회의기술에 의한 증인신문절차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법정에 출석하기 위하여 일정 거리를 이동함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격영상재판 절차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구나 ‘증인이 법원에 나타나기 불가능한 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 역시 명확한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상황의 사건에서 원격영상의 전송에 의한 증언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경우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 제(a)항의 해석은 단순히 이동 거리나 소요 시간과 같은 기계적, 단선

113) Martin Davies, “Bypassing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of the Use of Video and Audio Conferencing Technology in Transnational Litigation”, 55,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12;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2면.

114) *Beltran-Tirado v. I.N.S.*, 213 F.3d 1179 (9th Cir. 2000);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2면.

115) *Gulino V. Board of Educ. of City School Dist. of City of New York*, No. 96. Civ. 8414(CBM), 2002 WL 32068971(S.D.N.Y. 2003);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2면.

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주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 제(a)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어 원격 증언을 허용하고 있으나,¹¹⁶⁾ 일부 주 법원은 여전히 공개된 법정에서는 구두 증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⁷⁾

3. 적용 현황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 제(a)항을 근거로 한 판결은 Pennsylvania의 재판에서 California에 있는 전문가의 증언을 허용한 1999년의 *Norris v. Shiley* 판결¹¹⁸⁾과 인근 항소심 법원의 TV를 이용한 증언을 허용한 2009년의 *Parkhurst v. Belt* 판결¹¹⁹⁾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2005년 연방항소법원의 제9순회법원은 *Adam v.*

116) Ark.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2005; Colo. R.Civ.P. 43(i), “absentee testimony”, 2005; D.C. Sup.Ct.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1997; Me.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2005; Mass. R.Civ.P. 30A(k), “evidence by audio-visual recording”, 2002; Nev.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2005; N.D.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1999; W.Va.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1996; Wis. Stat. Ann. §807.13(2), “telephone or live audio-visual means”, 2006; Wyo.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1997;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3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8면.

117) Ala. R.Civ.P. 43(a); 16 Ariz. Rev. Stat. R.Civ.P. 43(f); Ga. Code Ann., §9-11-43(a); Haw. R.Civ.P. 43(a); Idaho R.Civ.P. 43(a); 34 Ind. Code app. R. 43(A); Ky. C.R. 43.04(1); Minn. R.Civ.P. 43.01(a); Miss. R.Civ.P. 43(a); N.M. R.Civ.P. 1-043(A); R.I. Super. R.Civ.P. 43(a); S.C. R.Civ.P. 43(a); S.D. Codified Laws §15-6-43(a); Utah R.Civ.P. 43(a); Vt. R.Civ.P. 43(a);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3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8면.

118) *Norris v. Shiley, Inc.*, No. Civ.A. 97-1953, 1999 WL1487499(W.D. Pa., 1999).

119) *Parkhurst v. Belt*, 567 F.3d 995(8th Cir. 2009).

Carvalho 사건¹²⁰⁾에서 처음으로 민사소송에서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에 의한 증언을 특정해 판단하였는데, 본 판결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가 규정한 요건인 절박한 상황이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이, 증인의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선서 여부, 증인의 주(州) 내부 또는 외부 거주 여부, 교호신문의 허용 여부만을 판단했다.¹²¹⁾ 이후 2007년 El-Hadad v. United Arab Emirates 사건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이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에서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¹²²⁾ 2011년 American Bank Note Corp. v. Daniel 사건에서는 피고가 Argentina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피고 거소의 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로, 피고가 New York으로 증언하러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당사자나 증인 모두 본인의 거소 관할의 법정에서 원격영상 전송을 통해 변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²³⁾

더구나 미국은 최근 코로나(covid-19)를 계기로 영상재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코로나(covid-19)가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역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법인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을 위한 법률(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¹²⁴⁾ 해당 법규에

120) 138 F. App'x 7, 8(9th Cir. 2005).

121) 김유진, “미국의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에 관한 조사”, 해외사법자료, 2015, 3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8면.

122) El-Hadad v. United Arab Emirates, 496 F.3d 658, 668-69 (D.C. Cir. 2007);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3면.

123) American Bank Note Corporation et al., Appellants v Hernan Daniel Daniele et al., Respondents 911 N.Y.S.2d 112 (2011).

124)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

는 형사재판에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3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사법위원회가 비상사태로 인해 연방법원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거나, 둘째, 정상적 재판업무에 지장을 받는 해당 지방법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신청이 있거나 담당 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셋째, 중죄에 대한 일반적인 재판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재판을 허용하였다.¹²⁵⁾

다만, 미국 연방법원행정처는 개정 가이드를 통해 언론과 일반 국민은 코로나 사태 동안 진행되는 영상재판에 접근할 수 있지만, 법정 촬영 및 방송을 금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영상재판을 부적절하게 녹화하거나 재방송하는 개인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¹²⁶⁾

III. 독일

1. 도입배경

독일의 사법 정보화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함께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적인 전자사법제도의 발전 추이에 따라 법원행정의 업무 효율성 및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에서 시작하여

nd=AA).

125)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126)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각종 재판절차의 간이화, 신속화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절차 관계인 간의 소통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원 외부영역에서 정보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¹²⁷⁾ 독일은 사법 정보화의 기대이익은 행정부에서의 전자정부(E-Government)와 유사하게, 효율성(Effizienz), 투명성(Transparanz), 시민의 접근성(Bürgernähe)으로 정하고 있으며,¹²⁸⁾ 법원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전자적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정부제도의 적용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전자정보처리(Elektronische Daten Verarbeitung: EDV)의 집중화는 법원행정에서의 비용 절감, 서비스 제고의 개선, 투명성의 확보, 관료화의 해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사법적 정보가 행정관청으로 집중, 저장됨에 따라서 사법부분연의 임무와 기능, 특히 법원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구나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사법행정(Justizverwaltung)은 집행(Exekutive)과 사법(Judikative)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정보는 다른 행정청의 정보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²⁹⁾

비록 독일의 전자사법제도의 출발이 전자정부제에 있지만 두 제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사법은 고유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며

127) Bund-Länder-Kommission für Datenverarbeitung und Rationalisierung in der Justiz, "Welches Maß an IT-Zentralisierung verträgt die dritte Gewalt?", CR, 2009, 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83면.

128) 전자화(Elektronisierung)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소통 개선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절차 신속화 및 생산성 증진을 최대한 이룩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으로 이해된다(G. Britz, Von der elektronischen Verwaltung zur elektronischen Verwaltungsjustiz, DVBl, 2007, S. 993 (994).

129) 전자정부제의 시행에 따른 IT-집중화(IT-Zentralisierung) 역시 사법행정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Bund-Länder-Kommission für Datenverarbeitung und Rationalisierung in derJustiz, "Welches Maß an IT-Zentralisierungverträgt die dritte Gewalt?", CR, 2009, 5).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사법제도(E-Justiz)라고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¹³⁰⁾ 사법부의 고유한 기능과 법관의 독립성, 사법행정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전자사법제도가 전자정부제도와 구별되지만, 두 제도가 전자행정사법(Verwaltungsjustiz)과 전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 소프트웨어, 표준화, 조직, 재정, 이용자의 수락 의사라는 6가지 공통적인 요건이 요구되었다.¹³¹⁾

독일의 전자사법제도(E-Justiz)는 각 주의 법무성과 법원의 E-Justice 회의(E-Justice Konferenz) 사업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Hessen 주가 이를 주도하였다.¹³²⁾ Hessen 주 정부는 1999년부터 Hessen 주 사법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조인과 경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하고, 법원 내에 케이블통신망과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07년부터는 모든 민사·형사, 행정, 노동 및 사회 법원의 소송절차와 질서위반사건의 절차에서 전자문서제출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각 법원에 영상회의시설을 설치하였다.¹³³⁾

이러한 Hessen 주의 사법 현대화 계획은 2010년 Hessen 주 법원의 정보통신개혁을 위한 E-Justice 회의 개최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1차 회의 보고서에서는 그간의 각종 사법행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효과를 정리하고, 원격영상재판절차에 대한 “재판 및 소추 절차상 영상회의기술의 이용강화를 위한 법률안(Entwurf

130) *Bernhardt/Heckmann*,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in: jurisPK-InternetRecht, 4. Aufl., Kap.6, Rn. 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82면.

131)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Gabriele Britz이 이들 6가지 요건을 제시했다(*Dies.*, Von der elektronischen Verwaltung zur elektronischen Verwaltungsjustiz, DVBl, 2007, 993, 996 f.)

132) <https://justizministerium.hessen.de/presse/pressemitteilungen>.

133) <https://justizministerium.hessen.de/presse/pressemitteilungen>.

eines 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을 발의하였다.

2012년에 개최된 제2차 E-Justice 회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법률개정안 등이 독일 연방으로의 확대 방안을 비롯해 검찰의 E-Justice 실무영역, 검찰·기타 기관과 사법부 사이의 소통 문제와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4년의 제3차 E-Justice 회의에서는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을 넘어서는 전자적 법률관계로의 발전 문제와 이를 통한 재정부담 경감을 예측하였다.¹³⁴⁾ 이에 따라 Hessen 주는 2022년까지 전자적 의사소통으로의 의무적 전환과 독일 연방 전체로의 확대를 계획하였으며, 대량의 정보가 외부로부터 탐지 또는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격영상재판을 비롯해 전면적인 전자적 법률관계에서의 정보보호를 강조하였다.¹³⁵⁾

2. 관련 규정

독일에서 민사사건에서의 원격영상회의기술의 이용은 전자소송의 발전으로 이해되며, 그 목적 역시 절차의 신속화와 비용 절감에 맞추어져 있다. 전자소송에 의하여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술심리에서 영상회의기술을 통해 출석을 대체할 수 있

134) Hessen 주의 재무장관이자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인 Thomas Schäfer는 “앞으로 법원의 모든 서면은 물론 검찰과 법원 간의 문서 역시 단계적으로 모두 전자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https://justizministerium.hessen.de/presse/pressemitteilungen>).

135) 제3차 회의가 Darmstadt 시에서 개최된 이유는 유력한 정보보호기관인 Darmstadt 중앙보안기술센터(Center for Advanced Security Research Darmstadt: CASED)의 소재지이기 때문이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87면).

우리라 예측되었다.¹³⁶⁾ 2001년 7월 27일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128a조가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은 민사재판상 구술 심리절차 및 증거조사절차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영상 및 음성 전송 방식인 영상회의기술의 이용을 출석에 대한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¹³⁷⁾ 해당 규정의 신설 목적은 ‘효율성 확보 (Effektivitätsgewinne)’ 및 ‘소송경제(Prozesswirtschaft)’를 통한 민사소송절차의 간소화, 비용 절감, 신속화에 대한 추구에 있다.

연방참사원(Bundesrat)은 2007년, 2008년에 민사·형사 재판절차에서의 영상회의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¹³⁸⁾ 2010년에 다시 강화된 영상회의기술 도입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¹³⁹⁾ 그 이후 Hessen 주와 수차례의 E-Justice 회의의 영향으로 2012년 독일 연방의회는 모든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실시하는 전자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¹⁴⁰⁾ 2013년 연방의회공청회에서는 ‘재판 및 소추절차상 영상회의기술의 이용강화를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이 결의되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법원 및 소추절차에서 영상회의기술(Videokonferenztechnik)의 이용 가능성 확대를 목표로, 법원조직법 제185조 제1항 이하에 제

136) *Hanns Prütting*, “Auf dem Weg vo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r Videokonferenz - Einkleiner Schritt auf dem Weg zum elektronischen Gerichtsverfahren”, *AnwBl* 5/2013, 330,330.

137) *Heinz Wöstmann*, in: Saenger (Hrsg.), *ZPO-Handkommentar* 3.Aufl, 2009, § 128a, Rn. 1; Baumbach/Lauterbach/Albers/Hartmann, *ZPO*, 66.Aufl., 2008, § 128a, Rn. 1.

138) BT-Drucks, 643/07 v. 9. 19. 2007.

139) BT-Drucks, 17/1224 v. 24. 03. 2010.

140) *H. Prütting*, “Auf dem Weg vo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r Videokonferenz - Einkleiner Schritt auf dem Weg zum elektronischen Gerichtsverfahren”, *AnwBl* 5/2013, 330,331.

1a항을 추가하여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소송법 제128a조에 영상 및 음성 전송에 의한 공판절차를 규정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¹⁴¹⁾

‘재판 및 소추절차상 영상회의기술의 이용강화를 위한 법률’ 제2조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128a조가 개정되었는데,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대리인과 보조인에게 구술심리 중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그 장소에서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심리는 해당 장소와 법정에 화상과 음성을 통해 동시 중계되며(민사소송법 제128a조 제1항),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당사자에게 신문 받는 동안 다른 장소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신문은 다른 장소와 법정에 화상과 음성을 통해 동시 중계되며,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보조인에게 다른 장소가 허가되는 경우에도 신문은 해당 장소에도 중계되며(민사소송법 제128a조 제2항), 중계는 녹화되지 않으며, 동조 제1항 제1문 및 제2항 제1문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28a조 제3항)¹⁴²⁾. 이때의 다른 장소는 법원 내 다른 장소이든 그 외의 다른 장소이든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3. 적용 현황

‘재판 및 소추절차상 영상회의기술의 이용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원격영상재판의 현황에 관한 통계가 없지만, Hessen 주는 2010년 전자사법제도 보고서(eJustice-Bericht 2010)에서는 2007년

141) 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특수법원인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의 절차에도 동일하게 개정되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92면).

142) 개정법률안 제3조 내지 제5조를 통해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28a조는 재정법원법 제91a조, 행정법원법 제102a조, 사회법원법 제110a조에도 동일하게 신설하였다.

전반기의 영상회의기술 이용 횟수는 약 50건, 총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2009년 전반기의 이용 횟수 약 150건, 총 이용시간 약 5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전자정부나 사법 정보화, 전자소송, 원격영상 재판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도입이 빠르지 않지만, 2013년 제정된 ‘재판 및 소추절차상 영상회의기술의 이용강화를 위한 법률’ 이후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통한 원격영상재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IV. 영국

1. 도입배경

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보화, ICT 발전 및 네트워크 준비를 해왔고, UN이 2012년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93개국 중 대한민국, 네덜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¹⁴³⁾ 영국의 사법부도 미국의 전자법정 기술과 21세기 법정 프로젝트, CTC 회의 등의 성과를 참고하여,¹⁴⁴⁾ 전자사법제도를 위한 각종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였다.¹⁴⁵⁾ 영국의 사법 정보화도 다른 나라의 전자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법원의 업무 처리 및 전자소송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며,¹⁴⁶⁾ 전자법정은 보안 이메일 서비스(Secure

143) ITU가 2011년 조사,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에서는 조사대상 152개국 중 10위, WEF가 2011년 조사, 발표한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대상 139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김진숙, 한영미,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 동향 - ① EU 10개국”, 한국정보화진흥원, 6면).

144) Jeremy Barnett, “The United Kingdom”, 12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004, p. 687.

145) 다른 분야와는 달리 중진의 법관들이 전자사법제도를 지지하였다(Jeremy Barnett, “The United Kingdom”, 12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004, p. 689).

146)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Rules) 제5.5조에서 전자문서의 전송과 파일링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전자소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적 의사소통과 문서 제출에 대한

e-Mail service: SeM) 및 형사사법시스템연계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Exchange: CJS Exchange)와 같은 형사전자사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¹⁴⁷⁾ 2001년 3월Kingston-upon-Thames 왕립법원(Crown Court)이 시범적으로 전자법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¹⁴⁸⁾

2. 관련 규정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Rules) Part 32.3에서는 법원이 증인의 증거를 비디오링크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항을, 민사절차법의 하위 법령인 실무지침 32(증거 편)(Practice Direction 32(Evidence)) 제29조 제1항은 민사소송에서 영상전송의 사용에 관한 안내사항을 부속서(annex) 3에 규정하도록 하고, 영상전송이 가능한 법원들(county court)을 사법 지원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법령을 통해 원격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한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의 허용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판사의 재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법원의 민사부(civildivision)가 증인신문에 있어서 원격영상회의기술의 사용을 허용한 구체적인 경우는, 원격영상회의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건, ② 대중의 소동을 피할 수 있는 사건, ③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

시행령 5B(Practice Direction supplements rule 5B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Filing of Documents)를 규정하고 있다.

147) Jeremy Barnett, The United Kingdom,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Vol. 12, Issue 3, pp. 690-691.

148) 이후 다른 법원에도 전자법정을 설치하는 LINK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개인용 PC를 지급하고 네트워크화 이후 각종 증거제출 및 현출을 디지털화하는 등 전자법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원격영상회의 기술에 의한 증인신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임상혁, 권재문,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2005, 14면 이하).

④ 환자나 아동이 관련된 사건, ⑤ 소송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사건, ⑥ 죄수가 관련된 사건, ⑦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참석할 수 없는 위급한 사건으로 제한된다.¹⁴⁹⁾

원격영상회의기술을 통한 증인신문의 장소는 첫째, 원격영상회의기술을 사용하는 법원(county court), 둘째, 적절한 회의실(an appropriate studio or conference room)이 가능한데, 사실상 후자와 같이 법원 외의 장소에 증인 등의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는 앞서 증인 출석의 구체적인 경우에서 ④ 환자나 아동이 관련된 사건, ⑤ 소송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사건, ⑥ 죄수가 관련된 사건, ⑦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참석할 수 없는 위급한 사건과 같이 법원 출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법원이나 적절한 회의실 외에도 증인신문을 위한 별도의 장소도 원격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증인 등의 진술이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격영상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하는 당사자 측은 미리 제반 준비를 한 후 원격영상을 통한 증언이 가능함을 법원에 알리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격영상신문을 신청한 측은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원격영상신문의 기술적인 사항을 감독할 기술자를 배치하고, 증인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 신문 시간, 방식 등을 사전에 모두 조율하여, 신문개시시간 20분 전까지는 이들 모두가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3. 적용 현황

영국의 원격영상재판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5년의 Polanski

149) 장두봉,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례”, 해외사법제도, 2015. 3., 2면 이하;

v Conde Nast (2005) UKHL 10 사건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Roman Polanski가 1977년 미국에서 기소당한 후에 강제송환의 위협이 없는 프랑스로 이주하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Polanski 감독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출판사에 대해 문서로 인한 명예훼손(libel)을 영국법원에 고소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협성을 고려하여 증언을 거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 Polanski가 미국 형사사건에서의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원에서의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Polanski의 증언을 영국법원의 원격화상회의기술을 통한 원격영상재판을 허가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영국 상원은 해당 사건에서의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하여, “민사절차법의 법원의 재량 규정에 근거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경제적인 소송에 이바지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증거제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가 선의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화상회의를 허가한다.”라고 판단하였다. Polanski 사건에서 원격영상재판의 허용 기준이었던 합리성(reasonableness)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의 Marketmaker Technology Limited & Ors. v. CMC Group Plc & Ors (2008) EWHC 1556 사건이나, 2012년의 Dr Robin Edward Lawrence v. The General Medical Council (2012) EWHC 464 사건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증인 신문을 허용하였다.

앞의 사건에서 원격영상재판의 허용 기준을 합리성으로 본 것과는 달리,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SA v. Rahim (2005) EWHC3550 사건에서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인지의 아닌지 따라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적시했는데 원격영상재판의 신청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

라 증인의 경우에 법원은 화상회의를 허가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AG of Zambia v. Meer Care & Desai (2006) 1 C.L.C. 436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격영상재판의 허용 기준으로 지출과 비용을 포함하여, 잠비아는 아직 발전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화상회의 기술을 이용하려면 많은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야 함을 지적하면서, 원격영상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의 MCGlenn v. Waltham Contractors Limited (2007) 사건에서는 증인의 제출증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고려하여, 만약 부수적 증거인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상회의를 통한 증거제출에 중요한 이유 여부도 고려사항이라고 보았다.

V. 일본

1. 도입배경

일반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은 재판절차에서 원격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반해서, 일본의 원격재판은 영상 송수신이 포함된 TV 회의뿐만 아니라 음성 송수신만을 의미하는 전화 회의도 원격재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6년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전화 회의 장치’ 및 ‘TV 회의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재판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⁵⁰⁾ 사실상 일본에서는 1996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고, 그 결과 각

150)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월, 2016, 114면.

재판소에 따라서, 같은 재판소 내에서도 재판부에 따라서 각자 운용하게 되었다. 1996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적극적 도입에 의한 민사소송절차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위해 이용 조건과 범위를 정하게 되었다.¹⁵¹⁾

일본 내에서의 원격재판제도는 TV 회의뿐만 아니라 전화 회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원격재판제도를 신설하기 전부터 실무에서 ‘전화 회의 장치’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 전화 회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 전화 회의는 지방재판소 본청과 사건 수가 많은 지부(支部)에서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는 기일의 사전협의, 준비서면 등의 확인 및 정정, 주장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과 확인, 화해 조항안의 조정, 심리계획의 사전협의에서 전화 회의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전화 회의 장치가 설치된 재판부의 수가 많지 않아 이용율이 높지 않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 재판소 혹은 재판부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문제점 등으로 민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해당 내용이 신설되었다.¹⁵²⁾

1996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이 증인신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절차는 재판관이나 담당 사무관에게는 큰 시간적 손실에 대한 부담, 다른 사건에의 영향, 당사자들의 비용부담 문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원격지에 거주하는 증인의 신문시에, TV 회의 장치가 설치된 근거리의 출석재판소에 있는 증인을 수소재판소에 설치된 TV 회의 장치(팩시밀리 병용 가능)를 통하여

151) 小田敬美, “訴訟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機器の利用”, 現代裁判法大系[第13卷-民事訴訟] 西口元 編, 新日本法規, 1998, 50頁.

152) 小田敬美, “訴訟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機器の利用”, 現代裁判法大系[第13卷-民事訴訟] 西口元 編, 新日本法規, 1998, 54頁.

증인신문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 통상의 증인신문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TV 회의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가 수소재판소(受訴裁判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때에 소송관계인의 중요성, 출석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소재판소에 출석시킬 필요성이 적을 경우,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니터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표정 등을 인식하면서 격지자 사이에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치를 신문에 이용하면 원격지에 거주하는 증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1996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1998년부터는 TV 회의를 통한 신문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TV 회의의 경우, 대부분의 기기 조작은 수소재판소가 담당하며, 원거리의 출석재판소 법정에서는 부분적인 장치의 조작, 선서 시의 안내, 송부된 증거의 제시, 법정경찰권 행사 보조를 위한 신문 중의 상시적 직원의 입회를 시행하게 된다. 출석재판소 법정에 재석할 수 있는 자는 법원 직원 외에 증인만이 허용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은 모두 수소재판소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재판소에 증인 외의 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증언 내용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석재판소의 법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고, 재판 방청도 수소재판소에서만 가능하다. TV 회의 장치의 영상 및 음성을 통해 출석재판소의 모습이 수소재판소에 전달되고 소송지휘권도 수소재판소의 재판관에 의해서 행사되므로, 공개주의 및 직접주의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관련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원격영상재판은 TV 회의와 전화 회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화 회의는 원격영상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재판제도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그 범위를 전화 회의가 아닌 TV 회의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 증인신문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는 2가지 경우를 민사소송법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호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신문 시 증인이 원격지에 거주할 경우 증인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재판소와 재판이 행해지는 관할지방재판소에서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가 가능한 TV 회의 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호에서는 증인이 원격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외에, 사안의 성질, 증인의 나이 또는 심신 상태,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및 기타 사정에 따라서, 증인이 재판장과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에서 진술하는 때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법정 이외의 별실 혹은 다른 재판소에서 TV 회의 장치를 이용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1항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 시 증인이 원격지에 거주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호)가 영상 등

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을 이용한 신문에서 열거된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를 들어 당사자를 수소재판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증인을 당해 신문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된 다른 재판소에 출석하게 하여 TV 회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호가 열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증인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를 수소재판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증인을 수소재판소 또는 당해 신문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된 다른 재판소(출석재판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 문서의 사본을 송신하여 이를 제시하거나 신문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3항). 이들 두 경우의 신문이 TV 회의를 통해 시행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증인의 출석재판소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의 출석재판소와 수소재판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4항).

나. 절차

수소재판소 법정에서 방청인이 TV 회의 장치로 증언을 방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은 공개 재판이라고 보고, 증인의 출석재판소가 수소재판소와 다른 재판소의 '법정 내'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TV 회의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의 절차는 ① 증인신문의 신청, ② TV 회의 방법으로 신문한다는 취지의 결정, ③ 다른 재판소에 대한 협력 촉탁, ④ 비용예납, ⑤ 증인소환, ⑥ 팩시밀리의 이용, ⑦ 선서서의 송부의 7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당사자는 통상의 증인신문신청방식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하는데, 재판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인신문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법 제20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TV 회의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재판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신청권은 당사자에게 없으므로, 당사자의 증인신문신청방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재판소는 증인신문신청에 대해 TV 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TV 회의 방법을 통한 신문실시, 증거조사기일 및 증인의 출석재판소인 수소재판소와는 다른 재판소를 결정해야 한다. ③ TV 회의 방법을 통해 증인신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TV 회의 장치의 사용, 증인 인도, 기기의 조작 및 법정경찰권의 행사 등 증인이 출석한 재판소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공조사건에 준하는 형식의 서면에 의해 협력을 촉탁해야 한다. ④ TV 회의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증인의 여비 외에 TV 회의를 위한 회선 사용료로(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증거조사에 필요한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들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사무는 수소재판소가 담당한다. ⑤ 수소재판소는 증인에 대하여 출석재판소의 주소 및 해당 법정 등을 명시한 소환장을 신문사항서와 함께 송달해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TV 회의 방법을 통한 증인신문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서를 동봉하는 때도 있다. ⑥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경우 문서의 사본을 송신하여 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밖에 신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2항), 해당 통신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증인이 출석한 재판소에서는 신문이 종료한 후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 외 여비 등의 청구서를 수소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수소재판소는 증인의 여비 등이 청구된 경우 지급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TV 회의 방법을 통한 증인신문 시행의 경우, 그 취지 및 증인이 출석한 재판

소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증인 등 목록의 비고란에 “증인은 모 지방재판소에 출석하여 TV 회의 방법으로 신문이 행해졌다.”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는, 민사소송규칙 제6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증인이 출석한 재판소도 ‘변론’ 장소의 부분에 상당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 전문위원으로서 전문가 소송절차 관여

의료나 건축 관련 소송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TV 회의 또는 전화 회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2조의3).¹⁵³⁾

(3) 감정인의 구두 의견 진술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의한 진술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15조의3은 재판소는 감정인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감정인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지 사이의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상대방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TV 회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53) ご存じですか？民事裁判でのテレビ会議・電話会議, ‘テレビ会議システムの活用’, “医事関係訴訟や建築関係訴訟等、専門的な知識が必要な訴訟では、専門家か専門委員として手続に関与する場合がありますが、ここでもテレビ会議システムや電話会議システムえお使うことができます。[民事訴訟法92条の3]” ; <http://www.courts.go.jp/saiban/wadai/2009/>.

3. 적용 현황

실무상으로 원격지에 거주하는 증인을 조기에 신문하는 방법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⁵⁴⁾ TV 회의 방법을 통한 증인신문은 통상의 법정보다는 주로 TV 회의 장치가 설치된 등근 탁자 형태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인에게 서증을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카메라의 조작은 입회서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증의 사본을 다른 재판소에 송부하고, 신문할 때마다 입회한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V 회의를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경우 속기록 또는 요령조서(要領調書)를 작성하지 않고 TV 회의 장치로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자체를 신문조서의 기재에 갈음한다. 다만 비디오테이프에 있는 녹화나 재생 시간을 표시한 지점에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를 기재한 인덱스가 첨부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가 어느 장면에서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 준비서면에 인용할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 중에 교신이 개시된 시점부터 경과 시간을 직접 입력해 두게 된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함으로써 인해 직접 증인의 진술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교체된 경우나 상소심 등의 경우처럼 직접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들은 재판관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소송 등에서 원격지의 감정인신문에 TV 회의 방법이 이용된 경우에는 통상의 재판에서 의학용어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는 신문과 마찬가지로 축어(逐語)조서 등이 작성될 필요성이 실무상 제기된 바 있다.¹⁵⁵⁾

154) 門口正人(代表編集), 民事証擲法大系 [第3卷] 各論(1) 人証, 青林書院, 2003. 3., 147-148.

VI. 중국

1. 도입배경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상의 소송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소송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OD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사건 전문 법원인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을 2017년 8월 항저우(杭州)를 시작으로, 항저우(杭州)에 처음 설치했으며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로 확대되어,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¹⁵⁶⁾ 중국에서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목적은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처음으로 인터넷법원이 설립되었다.¹⁵⁷⁾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소송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 시스템으로,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⁵⁸⁾ 그런데 인터넷법원이 설립되고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의 70% 이상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특히 전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일 정도로 중국에서의 인터넷법원은 온

155) 다만 감정인의 동작에 의한 설명이 있는 경우 등 비디오테이프가 유용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테이프를 축적조서에 첨부해 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門口正人(代表編集), 民事証法大系 [第3卷] 各論(1) 人証, 青林書院, 2003. 3., 147-148).

156)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7면(<http://www.copyright.or.kr>).

157)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158)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⁵⁹⁾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하여,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중국의 인터넷법원을 이용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또한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¹⁶⁰⁾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간단한 소송청구 사유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소장을 자동 완성해주고, 인공지능 법관과 소송 관련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판결 기간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¹⁾ 이하에서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최근 발간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통해 인터넷법원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관련 규정

인터넷법원을 통한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중국의 인터넷법원의 관할 및 심급, 인터넷법원을 통한 소송절차 및 이용 방법을 순

159)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160) 다만 외국인의 경우 중국인 대리인(변호사 등)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초에 실명인증을 위해 직접 해당 인터넷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언어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8면(<http://www.copyright.or.kr>));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161) 연합뉴스,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발간”, 2020. 7. 20.(<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57200848>).

차적으로 살펴본다.

(1) 인터넷법원의 관할 및 심급

중국의 심급은 2심 중심제로, 인터넷법원의 경우에는 기층법원(1심 법원)에 해당하며 인터넷법원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쇼핑 구매 계약, 인터넷 서비스 계약, 온라인 금융 대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 등 민사 및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인터넷법원은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치되어 있다.¹⁶²⁾ 1심법원 저작권 관련 사건에 대한 상소법원에 해당하는 중급법원(2심법원)은 지식재산권법원으로, 지식재산권법원은 특허, 소프트웨어, 기술 비밀, 저명상표 등 전문적이고 기술성이 강한 사건 등의 민사 및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설립되어 있다.¹⁶³⁾ 2심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지역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서는 지식재산권법원이, 기타 지역은 중급법원이 관할이 된다.¹⁶⁴⁾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경우 또는 소송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중급법원(지식재산권법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상소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에 해당한다.¹⁶⁵⁾

(2) 인터넷법원의 소송절차

162)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9면(<http://www.copyright.or.kr>).

163)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9면(<http://www.copyright.or.kr>).

164)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9면(<http://www.copyright.or.kr>).

165)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0면(<http://www.copyright.or.kr>).

인터넷법원은 인터넷기술을 소송의 전체 과정에서 도입하여, 기소(起訴), 조정(調解), 입안(立案),¹⁶⁶⁾ 증거제시(舉證), 대질 신문(質證), 개정(開庭), 판결(判決)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¹⁶⁷⁾

원고는 첫째, 소제기(提起訴訟) 단계에서는 ① 소전 숙지사항 확인(確認訴前須知), ② 분쟁유형선택(選擇糾紛類型), ③ 기소장 작성(填寫起訴狀), ④ 제출확인(確認遞交)의 순서를 거치며, 둘째, 입안(立案) 단계에서는 ① 입안상태조회(查看立案狀態), ② 입안 완료(已立案), ③ 소송비용 지불(交費), 셋째, 증거제시(舉證) 단계에서는 ① 들어가기(進入舉證), ② 증거편집(編輯證據), 넷째, 대질신문(質證) 단계에서는 ① 들어가기(進入質證), ② 증거에 대한 답변(回復證據), ③ 진실성(真實性), 합법성(合法性), 관련성(关联性)의 절차를 거쳐, 다섯째, (온라인 영상을 통한)법정심리(視頻庭審) 단계에서 ① 순서 대기(等待排期), ② 법정심리 진입(進入庭審), ③ 법정심리준비(庭審準備)에 이어, 여섯째, 법정 심리 종료(庭審結束) 단계에서는 법정 심리 종료 후, 원고와 피고는 자동으로 법정 심리 페이지에서 퇴장하게 되며 법정 심리는 종료되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판결(判決) 단계에서는 ① 이미 판결(已判決), ② 불복하면, 상소(不服上訴)하는 것으로 소송절차가 구성된다.¹⁶⁸⁾

반면에 피고는 첫째, 관련사건(关联案件) 단계에서는 ① 관련사건 클릭(点击关联案件), ② 관련번호 입력(輸入关联碼)을 거쳐, 둘째, 입안

166) 중국 특유의 소송절차로 정식으로 소송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2면(<http://www.copyright.or.kr>)).

167)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2면(<http://www.copyright.or.kr>).

168)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2-13면(<http://www.copyright.or.kr>).

(立案) 단계에서는 ① 입안상태조회(查看立案状态), ② 입안에 대한 심의(立案审核), ③ 이미입안(已立案), 셋째, 송달확인(送达确认) 단계에서, ① 송달확인상태 접속(进入送达确认状态), ② 문서확인(确认文书), ③ 신분확인(身份确认), 넷째, 증거제시(举证) 단계에서, ① 들어가기(进入举证), ② 증거편집(编辑证据)을 거쳐, 다섯째, 대질신문(质证) 단계에서는 ① 들어가기(进入质证), ② 증거 답변(回复证据), ③ 진실성(真实性), 합법성(合法性), 관련성(关联性)을 거쳐, 여섯째, (온라인 영상을 통한)법정심리(视频庭审) 단계에서는 ① 순서 대기(等待排期), ② 법정심리 진입(进入庭审), ③ 법정심리준비(庭审准备), 일곱째, 법정 심리 종료(庭审结束) 단계에서는 법정 심리 종료 후, 원고와 피고는 자동으로 법정 심리 페이지에서 퇴장하게 되며 법정 심리는 종료되어, 마지막 여덟째인 판결(判决) 단계에서는 ① 이미 판결(已判决), ② 불복하면 상소(不服上诉)가 가능하게 된다.¹⁶⁹⁾

(3) 인터넷법원의 이용 방법

인터넷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베이징 인터넷법원 첫 화면(<https://www.bjinternetcourt.gov.cn/>)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서 중문 또는 영문으로 언어를 선택해야 시작된다.¹⁷⁰⁾ ② 해당 페이지의 상단 두 번째 메뉴인 ‘전자소송 플랫폼(电子诉讼平台)’을 선택하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¹⁷¹⁾ 회원가입은 개인 및 기업(법인 또는 단체) 회원으로 구분되는데, 개인 회원으로 외국인이 가입을 하

169)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4면(<http://www.copyright.or.kr>).

170)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5면(<http://www.copyright.or.kr>).

171)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5면(<http://www.copyright.or.kr>).

는 경우, 신분증 종류는 기타로 선택하고 여권 사진면을 업로드하는 데 PC에 저장된 이미지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는 중국 내 주소로 작성, 연락처는 중국 내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입력하고, 기업법인 또는 비법인 성격의 단체 조직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단체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법인 또는 대표자의 개인 정보 및 중국 내 주소지와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에, 정보입력 후 본인 사진을 업로드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로그인하면, ③ ‘전자소송 플랫폼’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에 개정공고,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 소송안내, 소송비용 계산 및 각종 문서 양식 다운로드 등의 메뉴들이 있어 소송 진행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화면 맨 하단 오른쪽 메뉴인 ‘소송 안내(诉讼指引)’에서는, 회원가입, 입안, 송달과 응소, 조정, 개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¹⁷²⁾



〈 소송 준비과정 안내 영상 화면 선택 〉

172)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5-16면(<http://www.copyright.or.kr>).

소송비용의 납부방법은 중국민사소송법과 중국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은 중국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납부방법에 근거하여 납부하며, 전자소송 플랫폼 하단에 자동계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납부 대상, 항목, 기한 및 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송비용 납부방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납부하게 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납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¹⁷³⁾

가. 원고를 위한 소송 안내



〈 원고의 기소절차 안내화면 〉

원고는 기소절차 안내화면을 통해 ① 자료준비: 소송 전에 소송장, 신분증,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② 로그인/회원가입: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③ 온라인 입안: 소송에 대한 안내 확인 후 인터넷법원 접수 가능 사건 범위 확인, 분쟁 유형 선택, 온라인상에서 고소장 작성 또는 업로드, 입안을 진행하며, ④ 입안 심사: 심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위챗, 시스템 상의 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173)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34면(<http://www.copyright.or.kr>).

통지하고, ⑤ 온라인 소송: 입안 후 사건센터(案件中心)에서 소송비용 납부, 자료 제출, 증거제시 및 대질 신문, 온라인 재판 참여, 재판 결과 확인과 같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¹⁷⁴⁾

나. 피고를 위한 소송 안내



〈 피고의 응소 순서에 대한 안내 화면 〉

피고는 응소절차 안내화면을 통해 ① 소장도달: 법원에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송달한 응소 문자 통지, 사건 관련 번호, 소송 서비스 고지서를 확인하고, ② 로그인/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③ 관련사건: 사건센터(案件中心), 심리(审理), 응소(我要应诉)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④ 온라인 응소답변: ‘응소(我要应诉)’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를 제기하고, ⑤ 온라인 소송: 사건센터(案件中心)에서 온라인으로 고소장 수령 및 증거, 송달 문서 확인, 서류 제출, 증거제시 및 대질 신문, 온라인 재판 참여, 재판 결과 확인과 같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¹⁷⁵⁾

174)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6-17면(<http://www.copyright.or.kr>).

175)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17-18면(<http://www.copyright.or.kr>).

3. 적용 현황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2018년 총 4,918건의 온라인상 저작권 사건을 수리했는데, 사건의 유형을 보면 전송권 침해 사건이 가장 많으며 전체 사건의 약 96.6%에 해당한다.¹⁷⁶⁾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18년 9월 9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총 34,263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25,333건 종결), 이 중에서 저작권의 권한 귀속 및 저작권 침해 사건은 26,607건으로 전체 수리 사건의 77.7%를 차지했다.¹⁷⁷⁾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 동안 총 37,688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27,956건 종결), 이중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건’은 전체 수리 사건의 56.87%로 나타났다.¹⁷⁸⁾

중국의 인터넷법원 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송 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 미만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법원을 이용한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¹⁷⁹⁾ 얼마 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영국 애니메이션인 ‘페파 피그(Peppa Pig)’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¹⁸⁰⁾에는 소의 제기부터 1심 판결까

176) 온라인 저작권 사법보호보고서(网络著作权司法保护报告);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49면 (<http://www.copyright.or.kr>).

177) 베이징 인터넷법원 심판백서(北京互联网法院审判白皮书), 2019. 9.;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50면(<http://www.copyright.or.kr>).

178) 2019년 광저우 인터넷법원 백서(广州互联网法院白皮书), 2019. 9. 28.;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51면(<http://www.copyright.or.kr>).

179)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6면(<http://www.copyright.or.kr>).

180) 원고 애슬리베이커데이비스(Astley Baker Davies Limited, 이하 ‘애슬리사’)와 엔터

지는 10일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⁸¹⁾

또한, 인터넷법원을 이용한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소장이 완성되고, 피고의 스마트폰으로 송달된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소장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를 통해서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¹⁸²⁾ 소의 제기부터 소송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므로 실제 심리기일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서 법관을 비롯한 원고, 피고가 화상채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편리하고 판결까지의 기간이 짧아 일반 소송에 비해 침해 지속행위를 보다 빨리 중지할 수 있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상 등이 빨리 결정되는 점 등이 인터넷법원의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⁸³⁾

테인먼트원(ENTERTAINMENT ONE UK LIMITED)은 페파피그(Peppa Pig)시리즈 작품의 저작권자로, 두 회사는 페파피그 애니메이션과 파생상품을 생산 및 제작하여 전 세계에 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 두 회사는 “산토우시모전자상거래 회사(汕头市某电子商务有限公司, 이하 ‘전자상거래 회사’)가 개설한 ‘집판유핀1(聚凡优品1)’ 온라인 상점에서 페파, 조지, 페파 엄마, 페파 아빠 인물캐릭터가 인쇄된 ‘페파피그주방소천지(小猪佩奇厨房小天地)’라는 완구를 판매했으며, 모 완구회사가 만든 해당 상품의 제품설명서에도 페파, 조지, 페파 엄마페파, 아빠의 캐릭터 사진을 이용하였다. 전자상거래 회사가 허락 없이 피소된 제품을 판매했고, 완구회사는 허락 없이 피소된 침해상품을 생산 및 판매했으므로, 모두 자신들의 저작권을 엄중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심리 후 피고 전자상거래 회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와 30,000위안의 손해배상을, 피고 완구회사에 대해서는 침해상품의 생산 및 판매 중지와 120,000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49-50면 (<http://www.copyright.or.kr>)).

181)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7면(<http://www.copyright.or.kr>).

182)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7면(<http://www.copyright.or.kr>).

183)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43면(<http://www.copyright.or.kr>).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소송플랫폼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 인터넷법원의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 실명인증의 경우 현재는 중국 신분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밖에 없는 외국인은 해당 법원을 직접 찾아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소송비용의 지불이나 전자서명 등에 중국 휴대전화 번호와 위챗 앱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¹⁸⁴⁾

특히 저작권 관련 소송은 인터넷법원의 설립을 통해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전에 비해 소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소송에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되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한국 권리자의 중국 인터넷법원 이용을 돕고자 인터넷법원에 대한 실명인증 처리 지원, 저작권등록 지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소송플랫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¹⁸⁵⁾

VII. 정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시간 및 비용의 절감, 즉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원격영상재판의 도입 목적이 당사자가 법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통점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라는 문제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

184)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44면(<http://www.copyright.or.kr>).

185) 연합뉴스,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발간”, 2020. 7.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57200848>);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비롯해 충분한 증인의 확보와 전문가, 감정인, 통역인 등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판절차의 충실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외국에서 시행되는 원격영상 재판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점인데, 특히 원격영상재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럽국가들이 전문가, 감정인, 통역인의 활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 효율성의 문제가 원격지가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증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다. 원격영상 재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최근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일본에서도 증인의 보호나 증언에 있어서 증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은 매우 중요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을 민사소송법이나 절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을 통해 제정되나, 각 조문은 민사소송법이나 절차법에서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원격영상재판에서 나타나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은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는 장소로 외국의 경우는 법정뿐만 아니라 법원 내 다른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법원이 아닌 행정관청이나 교정시설,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등과 원격영상연결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인터넷법원의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우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도 소송비용, 시간 및 공간적 제약 등으로 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외국인에게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인

터넷법원 제도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중국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⁸⁶⁾

또한, 우리를 포함해 외국 대부분의 원격영상재판이 녹화되는 것에 반해, 독일은 예외적으로 녹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은 우리의 원격영상재판에서도 고려할 요소라고 보인다.

186) 화상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인만 출석하며, 원고가 외국인이고 재판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하는 도중에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재판 상황을 소통할 수 있다(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8, 42면(<http://www.copyright.or.kr>)).

제4장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방안 검토

I. 원격영상재판 재시행에 대한 기술적·인식적 측면에서의 검토

원격영상재판의 기술 수준에 대한 도입 초기 시의 염려는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적정성이나 재판참여권에 관한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우리의 원격영상재판은 과거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한차례 시행되었다가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시행이 거의 중단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격영상재판의 재시행과 관련해 최근에는 증인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사실심 충실화 등을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covid-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와 업무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원격영상재판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의 재시행 가능성을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당시의 기술 수준 및 활용도와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수준 및 일상생활에서 영상기술의 활용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당시 사법 정보화는 법원 외부영역에 대한 정보화가 부분적으로는 진행되었을 뿐 원격영상재판은 물론, 이전단계인 전자소송 역시 시행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전자정보화의 초기 단계였으며,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원격영상재판을 시도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았다. 사실상 이러한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는 외부영역의 정보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외부영역의 정보화와 피드백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원 외부영역의 정보화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놓여있는 전자법정과 원격영상재판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당시 법원 내부영역의 정보화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⁸⁷⁾

그렇다면 현재 원격영상재판에서의 당사자 또는 증인이 현 수준의 영상회의 기술 수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격영상재판의 당사자나 증인 등은 일반 법정에서의 재판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원격영상재판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기술적 수준에 대한 불신이나 염려는 당사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서 당사자의 재판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워진다.¹⁸⁸⁾ 따라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본래의 재판절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와 동일한 정도의 심리적 상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나 증인이 가지는 인식만이 아니며, 법원 역시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한 재판절차의 진행 중 영상이나 음성의 끊김이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등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것을 염려할 수 있고, 심지어 당사자를 대면하는 것과 비교하여 영상을 통해서만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안색의 변화, 미세한 태도의 변화나 동작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염려를 할

187)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59면.

18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3면.

수도 있다.¹⁸⁹⁾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완전무결의 요청은 사실상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기보다는, 영상회의기술에 대한 이질감, 나아가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한 미지의 불안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책임을 고려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기술적 준비를 세심하게 할 필요도 있으며,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심리적 불안 역시 불식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도 요구된다.

원격영상재판을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영상회의기술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으며 이를 재판절차에서도 문제없이 응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수준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기술적 완전무결을 입증함으로써 현재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입장과 이와는 달리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기에는 불완전한 측면이나 실제 발생할 개연성이 지극히 낮은 극단적인 가상의 사례까지 상정하여 시스템의 과잉 완벽성을 요구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기술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만이 남겨지게 된다. 원격영상재판의 시행을 위하여 기술적 완전무결을 요구하는 입자에서는 흔히 원격영상재판을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보고 기존의 재판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격영상재판은 별개의, 새로운 재판절차가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영상회의기술이라는 특정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인 전자사법제도

189) 극단적으로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쌍둥이라든지 외모가 유사하거나 분장을 한 증인에 의한 허위진술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할지 모른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3-14면).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발견된다면 증인을 법정으로 출석하는 방안 등이 있으므로, 이런 가상적 우려가 있다고 하여 원격영상재판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빈약하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50면).

의 발전단계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¹⁹⁰⁾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측면에의 인식과 함께 소송당사자의 재판참여권이나 재판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원격영상재판절차를 통한 증인신문의 경우에서 소송법상의 직접주의나 대면권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이 대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특히 영미법계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에서는 원격영상재판에서 대면권의 보장을 위한 요건들을 설정함으로써 대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호신문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쌍방향 원격영상회의기술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 즉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또한, 원격영상재판은 결국 물리적 출석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격영상재판이 허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익상 이유가 필요하며, 공익상 이유는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 또는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¹⁹¹⁾ 물론 해당 연구보고서는 민사소송체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형사 법정에서의 증인의 출석은 아니지만,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나 증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상회의나 영상통화는 이전에는 정보화 시대를 표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었고, 이러한 기대와 상상은 물리적 대면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불안감을 가중

190)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4면.

19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47면.

하기도 했다. 소통(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기존의 전달방식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함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함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통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경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기술은 오래전에 개발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영상통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률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우리 사회에서도 비교적 최근어야 보편화 되었다고 평가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상통화나 영상회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을 통한 의사소통에 대한 막연한 이질감이나 우려가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으며, 이보다 더 나아가 물리적 대면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영상통화나 영상회의를 넘어 영상회의기술을 통해 법적 분쟁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인식 수준을 넘어 충분한 신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 기기의 기술적 수준이나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사자와 법원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영상과 음성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서로 거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법원, 증인이나 당사자가 가지는 원격영상재판 자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인식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영상회의 기술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재판절차에 이용한 경우가 원격영상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1995년 12월 6일에 제정 및 시행된 원격영상재

판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이미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었으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원격영상재판은 사실상 그 시행이 중단되었다.

우리 사법제도에서 원격영상재판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사법제도의 실현과 이를 통한 재판청구권의 전역적인 보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법원의 설립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효율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우며, 설사 시·군 단위로 법원의 설립을 가정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시나 군 단위의 법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실제 시행이 빈번한 곳이었던 포항지원과 울릉도 주민의 예가 대표적인데,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게 되면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울릉도의 주민은 포항지원에 소송제기나 재판기일 출석을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실적으로 울릉도에 법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원격영상재판이 대안으로써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¹⁹²⁾

결국, 오랜 시간이나 먼 거리로의 이동의 불편함이나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 이동의 불가능과 같은 문제가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해소될 수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¹⁹³⁾ 이는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원격영상재판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전역적 사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장점이 시행을 위한 가장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¹⁹⁴⁾

192)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92면

193)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 의안원문(의안번호 141218), 1면.

19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월, 2016, 153면.

원격영상재판제도는 전자사법제도의 필연적 발전단계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중요성, 국가 정보화 정책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과거 시행이 저조했다는 사례만으로 재시행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에는 지배적이다. 1995년에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이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는 기술적 측면의 한계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을 원격영상이라는 기술을 통해 실현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비롯해 원격영상이라는 기술 자체가 생소하게 인식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된 시점과 약 25년이 지난 현시점을 비교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비롯하여 이러한 기술 사용과 관련한 우리의 인식 또한 급격히 변화했으며, 더구나 최근의 코로나(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나,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었는데, 이미 우리 사법부 또한 2차례에 걸친 휴정을 권고한 바 있어 전면적인 업무의 중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covid-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95년에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와 같은 코로나(covid-19) 사태를 예상한 것은 아니나, 코로나(covid-19) 이후에도 비대면을 통한 업무가 가능한 영역, 특히 재판과 관련해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고려는 장래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나 비상시에 전면적인 업무중단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¹⁹⁵⁾ 특히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활용이 코로나

195)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 연장에 들어가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한겨레, “원격영상재판 신청하세요”.

(covid-19)와 같은 국가 비상 또는 위기 시의 대안만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편의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비롯해 증인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재판권 보장 및 사실심 충실화라는 목적을 위한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신설 규정 및 시행 요건·방식에 대한 검토

1. 신설

법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두 번의 휴정이 권고되었는데, 올해 3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 대비 원격영상재판 활용 권고 이후에 변론준비기일에 판사실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었고, 6월에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이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¹⁹⁶⁾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각각 경남 거제와 통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였다.¹⁹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현재와 같은

2020. 3. 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064.html#csidx2b3d6b660af8d8d90f94691a9bcf012).

196) 매일경제, “25년 쌓인 먼지 털고…법원 영상재판 ‘기지개’”, 2020. 7. 26.(<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3536/>).

197) 매일경제, “25년 쌓인 먼지 털고…법원 영상재판 ‘기지개’”, 2020. 7. 26.(<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3536/>); 서울경제, “‘햇도그 상표권 분쟁’, 코로나19에 원격으로 재판”, 2020. 10. 3.(<https://www.sedaily.com/NewsView/1Z8ZL87J1C>).

코로나(covid-19)를 대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나 비상시에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격영상재판의 가장 중요한 시행 목적이었던 장거리나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이 비대면 업무의 필요성이라는 다른 측면에서의 ‘이동의 어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1995년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저조한 이용률로 몇 년 후에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오히려 코로나(covid-19) 발생을 통해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활용이 같은 국가 비상 또는 위기 시의 대안만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통해 일반 국민의 편의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비롯해 증인, 감정인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재판권 보호 및 사실심 충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1995년에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이후에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위해 신설된 규정을 살펴보고(2), 이어서 원격영상재판 시행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인 원격영상재판 시행 요건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3).

2.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위해 신설된 규정

1995년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몇 년 후에 시행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2010년 3월 24일에 해당 특례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없었으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적 용어 및 문장 구조를 순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오히려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내용의 진전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된 민사소송법과 2016년 9월 6일 제정된 민사소송규칙, 2020년 6월 1일 개정 및 신설된 민사소송규칙, 2020년 7월 22일 재판예규로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을 통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2016년 3월 29일)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법률 제14103호)을 통한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14103호). 민사소송법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며, 둘째, 감정 절차와 감정 결과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셋째,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신설된 규정은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

항).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 법원은 첫째,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증인이 나이, 심신 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동조 제1항). 앞의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동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1항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 신문의 경우에, 법원은 첫째,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둘째,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허용하며, 이는 동법 제340조를 통한 감정증인 신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동법 제341조를 통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계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민사소송규칙을 통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2016년 9월 6일)

2016년 9월 6일 민사소송규칙은 2016년 3월 29일에 개정된 민사소

송법의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격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고,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을 위해 신설되었다. 2016년 3월 29일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인 제327조의2, 제339조의3를 신설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증인 등의 신문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는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동조 제1항), 동조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 제1항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문서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동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에 따라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취지와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곳을 조서에 적어야 함을(동조 제4항) 규정하였다.

또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등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2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에 따른 감정

인신문, 제340조 단서에 따른 감정증인신문 및 제341조 제3항에 따른 감정서 설명의 경우, 감정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감정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¹⁹⁸⁾

(3)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년 7월 22일)

2020년 7월 22일에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재판예규 제1753호(재일 2020-1)로 제정 및 시행되었다. 제정 이유는 각종 법령 제정, 개정으로 도입된 다양한 유형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하고(지침 제4조), ② 재판장 등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으며(지침 제6조), ③ 재판장 등은 증인 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출석 장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기일 전까지 출석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지침 제9조), ④ 문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계시설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이나 모사 전송,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지침 제15조), ⑤ 중계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문을 중단하되, 장애 사유 해소 후 필요한 경우 종전 신문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⑥ 출석법원 영상재

198) 이 경우 제9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되, 전자패드 서명 또는 전자문서 변환 방법으로 서류 송부에 갈음할 수 있고(지침 제 18조), ⑦ 수소법원 형사 법정에 중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지침 제23조), ⑧ 감정인 등에 대하여 서류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감정료와 함께 지급하고(지침 제33조), ⑨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 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되, 기일에서는 구두로 확인할 수 있고(지침 제36조), ⑩ 재판장 등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차회 기일에 고지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지침 제38조) 것이다.

(4) 재난 상황에서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민사소송규칙(2020년 6월 1일)

2020년 6월 1일 개정 및 신설된 대법원규칙은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신설된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은 재판장 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첫째,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동조 제3항), 둘째,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동조 제4항)의 경우에, 재판장 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양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

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원격영상재판 시행 요건·방법

(1) 시행 요건에 대한 검토

원격영상재판 시행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시행 요건은 물적·객관적 요건과 인적·주관적 요건으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가. 물적·객관적 요건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전제 요건으로서의 물적, 객관적 특성은,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의 객관적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정의하면서,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고 원격영상재판의 객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를 통해 법원은 “① 멀리 떨어진 곳 또는 ②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③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원격영상재판의 객관적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들 개정은 기존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②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고 정한 요건에 “① 멀리 떨어진 곳”과 “③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추가해 객관적 상황에서의 변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③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완전히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보기에선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나 상황이 주관적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후의 인적이고 주관적 요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및 제340조 단서 조항은, 법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증인에게 적용된 2가지 요건인, ① 멀리 떨어진 곳, ② 교통이 불편한 곳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 거주”를 객관적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증인에게 적용되는 원격영상재판 시행에 관한 객관적 요건에 비해서, 감정인과 감정증인의 경우는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비롯해 증인과도 그 역할, 지위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 거주”라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에게는 멀리 떨어진 곳과 교통이 불편한 곳을,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에게는 외국 거주를 원격영상재판의 요건으로 다르게 규정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오히려 원격영상재판의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통일된 명

확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원격영상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소송당사자를 포함한 재판관계인에 대한 재판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계인은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도 포함하고 있어, 신설된 민사소송법이 증인, 감정인 및 감정증인의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송당사자를 제외하고 있는 문제도 같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적·주관적 요건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전제 요건에서 인적 특성은, “재판관계인”의 개별적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제327조의2)의 경우, 법원은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증인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인과 감정증인에 대해서도, 법원은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증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감정인과 감정증인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을 고려한 원격영상재판을 인정하게 되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및 제340조 단서 조항). 또한,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1일 신설된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은 “재판장 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해당 규칙의 적용은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원격영상재판을 위한 증인, 감정인 및 감정증인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별적 요건은, ① 증인의 나이, ② 심신상태, ③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④ 신문사항의 내용, ⑤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원격영상재판 시행을 위한 교통의 불편함이나 이동의 어려움과 같은 기존의 객관적이고 물적인 요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339조의3 및 제340조 단서 조항을 통해 인적이고 개별적, 주관적인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및 감정증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심 충실화라는 사법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의 원격영상재판에서는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위치나 중요도가 증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소송당사자의 경우에도 앞서 증인에게 인정되는

나이나 심신상태 등은 원격영상재판의 시행을 판단하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요건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신설된 민사소송법의 증인, 감정인이나 감정증인 등의 경우나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같은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건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행 방법에 대한 검토

일반적인 원격영상재판의 경우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그런데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를 통해 기존의 “원격지의 법정”으로 한정된 장소적 요건을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증인신문이 가능해져서 이용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이전보다 쉽고 자유롭게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과 관련해서도 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2를 통해 감정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한다고 정해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원격영상재판이 모든 장소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가능한 장소(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이 가능한 장소(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로 한정된다. 이는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신설된 민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증인, 감정인 등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설된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2020년 10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신청한 전문가 감정증인인 류카이상 교수와 장신보 교수를 통한 증언이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사건은 중국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보험금 구상금(약 1,000억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¹⁹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있는 통역인이 중국어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증언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였다.²⁰⁰⁾ 이는 2016년 3월 29일 우리 민사소송법을 통한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로 가능했으며, 외국에 있는 전문가 감정증인에 대해 원격영상재판을 잘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신설된 이들 민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증인이나 감정인 등이 이전과 비교해서 원격영상재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이용 요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대해서는 원격지의 다른 법정인 아닌 장소,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 장치가 설치된 장소면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송당사자는 이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

199) 소송은 중국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 A사에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2013년 9월 A사의 중국법인 자회사가 중국에서 B사의 도급을 받아 공사하던 중 불이 났다. 이후 B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모기업 A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액만 1000억 원 상당이다. 소송은 서울에 났지만 불은 중국에서 났고, 각 회사의 계약 내용상 따라야 할 법은 중국법이였다. 이날 우리 법정에 감정증인으로 화상 출석한 류카이상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와 장신보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중국 민법 권위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류카이상 교수는 1987년 베이징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2001년에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장신보 교수 역시 중국 민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 및 학술 논문을 냈다. 이들이 우리나라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이 중국 민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우리 법정에 올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 재판 시도하는 법원”, 2020. 10. 26.(<https://news.joins.com/article/23903886>)).

200) 중앙일보, “우리 법정에 올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020. 10. 26.(<https://news.joins.com/article/23903886>).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송당사자가 증인, 감정인과는 소송 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나, 오히려 증인의 경우에는 신변 보호나 증언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엄격한 신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주체로서, 본인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앞서 신설된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소송당사자를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들을 증인이나 감정인 등과 구분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소송당사자를 원격영상재판의 주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더욱 작다고 보여진다.

또한, 원격영상재판이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확립된 재판의 구술심리주의를 비롯해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라는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은 오히려 서면심리와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며, 원격영상재판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원격영상재판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이 기존의 민사소송절차의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민사소송규칙 제80조)이나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규칙 제84조)보다 구술심리나 직접심리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과는 달리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국적의 소송당사자(일반적으로 피고)나 증인에 대해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화상회의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의 영사관과 같은 공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의 특정의 장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인 소송당사자의 소속

국가와 우리나라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국가의 시설이 갖추어진 법정에서 또는 재판관할의 영토 규정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사관과 같은 공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의 특정의 장소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원격영상재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이 원고로 본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우리 법정의 준비된 장소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소송 유형에 대한 검토

1. 서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첫째,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사건, 셋째,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동조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는

원격영상재판의 근본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원격영상재판 도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시·군 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석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도 원격영상재판 시행에 필요한 이유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된 사건 외에 원격영상재판의 시행에 적합한 소송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2. 원격영상재판에 적합한 소송의 종류 및 유형

(1) 민사비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민사비송사건으로,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의 신문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한정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하는 사건으로서, ① 법인에 관한 사건, ② 신탁에 관한 사건, ③ 재판상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④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⑤ 법인 및 부부재산약정의 등기가 대상이 된다.

이외에 경매법상의 경매사건, 조정사건과 중재판정사건 등이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사비송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²⁰¹⁾

(2) 항소심의 경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 3월 판사실에서 처음으로 민사 변

201) 그리고 해당 연구보고서는 그 범위를 민사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하는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으로서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 등이 원격영상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론준비절차를 진행했는데, “원격영상재판을 코로나(covid-19) 감염의 사전 예방책으로 평소 법정 출석을 최소화하는 재판 운영과 일부 감염자 발생 시 해결방안으로 법정재판을 다소라도 보완할 수 있는 재판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영상재판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²⁰²⁾

또한,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① 영상통화 방식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증인신문 외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② 만약 법정재판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막연히 재판을 연기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영상재판을 통해 각종 심리를 지체없이 진행해 변론 종결이 가능하며, ③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변론준비절차가 충실하게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이뤄지게 되므로, 법원 및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언급했다.²⁰³⁾

그리고, 처음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각종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1심보다, 1심의 판단을 기초로 특정 쟁점에 관한 주장·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영상재판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²⁰⁴⁾ 항소심에 대한 원격영상재판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203)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204)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제5장 결 론

최근 코로나(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일상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일반 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의 재택근무나 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근 2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화상 전화, 화상회의, 화상수업과 같은 기술의 활용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의 활용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약 25년 전에 시행되었다가 중단된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 한계와 인식의 한계가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원격영상재판 관련 법제가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거나 예상하여 정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이 가능한 때에도 비대면이 가능한 업무를 활성화하거나 유지한다면, 이후 흑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 기존 업무가 완전히 중단 또는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 경제적 측면을 비롯하여, 증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실심 충실화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최근에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한 2016년 3월 29일 민사소송법, 2016년 9월 6일 민사소송규칙, 2020년 6월 1일 민사소송규칙 및 2020년 7월 22일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증인,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에 대한 원격영상재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증인과 감정인·감정증인을 구분하여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요건과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어, 소송당사자까지 포함하여 요건을 일치시키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 소송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국가의 시설이 갖추어진 법정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사건 외에도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의 신문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비송사건에 대해서도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경우에는 사건을 심리하고 각종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1심에 비해서 원격영상재판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동범, “형사재판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 강민구, “한국형 전자법정 확충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 강민구, “사이버스페이스와 사법부”,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
- 공현진,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법자료, 2015
- 김도훈,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
- 김유진, “미국의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에 관한 조사”, 해외사법자료, 2015
- 김진숙, 한영미, “전자정부 선진국의 정책추진 동향 - ① EU 10개국”,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 김홍엽,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2012
- 노태약, “미국 연방법원의 자동화·전산화 추진 현황”, 재판자료-정보화와 재판 실무 제79집, 1998
- 매일경제, “중국서 온라인 저작권 분쟁 생기면 인터넷법원 활용하세요.”, 2020. 7. 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9740/>)
- 매일경제, “25년 쌓인 먼지 털고...법원 영상재판 ‘기지개’”, 2020. 7. 26.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3536/>)
- 박미영,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법률신문, 2020. 9. 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699&kind=AA>)
- 법원행정처, 사법부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 2008
-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2

베이징 인터넷법원 심판백서(北京互联网法院审判白皮书), 2019. 9

백주연, “50억 들었지만...실효성 없는 원격영상재판”, 서울경제, 2018. 9.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U7T2YHM>)

서울경제, “‘핫도그 상표권 분쟁’, 코로나19에 원격으로 재판”, 2020. 10. 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ZL87J1C>).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 7면(<http://www.copyright.or.kr>).

안경옥,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004
연합뉴스,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발간”, 2020. 7.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57200848>)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41218) 심사보고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139) 검토보고서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연갑, “구술심리 소묘”, 안암법학 제24권, 2007

임상혁, 권재문,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2005

장두봉,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해외사례”, 해외사법제도, 2015

정영수, 온택트(Ontact) 시대와 민사재판에서 ODR의 활용 가능성, 법학연구 제 30권 제3호, 2020,

정영진, “법원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법논집 37집, 2004

중앙일보, “우리 법정에 올려져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020. 10. 26. (<https://news.joins.com/article/23903886>)

한국정보문화센터, PC 통신 이용자 행태 및 태도조사, 1995.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용어사전, <http://word.tta.or.kr/terms/terms.jsp>)

한충수,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 민사소송 제15권 제1호, 2011

허현호, “현직 판사 첫 확진...전국 법원 휴정 권고”, 뉴스투데이, MBC 뉴스 (2020. 8. 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82117_32531.html

황찬현, “정보화와 재판실무”, 재판자료 79집, 1998

[외국문헌]

American Bank Note Corporation et al., Appellants v Hernan Daniel Daniele et al., Respondents 911 N.Y.S.2d 112 (2011)

Ark. R.Civ.P. 43(a),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2005

Beltran–Tirado v. I.N.S., 213 F.3d 1179 (9th Cir. 2000)

Benjamin Glunz, Psychologische Effekte beim gerichtlichen Einsatz von Videotechnik, 2012

Bernhardt/Heckmann,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in: jurisPK–InternetRecht, 4. Aufl., Kap.6, Rn. 4

Bund–Länder–Kommission für Datenverarbeitung und Rationalisierung in der Justiz, “Welches Maß an IT–Zentralisierung verträgt die dritte Gewalt?”, CR, 2009

Diamond Locke E. Bowman, Manyee Wong, Matthew M. Patton, “Efficiency and Cost: The Impact of Videoconferenced Hearings on Bail Decis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100 Issue 3 Summer

Dies., Von der elektronischen Verwaltung zur elektronischen Verwaltungsjustiz, DVBl, 2007

El–Hadad v. United Arab Emirates, 496 F.3d 658, 668–69 (D.C. Cir. 2007)

Frank Fechner, Medienrecht, 13. Aufl., 3. 18

Gulino V. Board of Educ. of City School Dist. of City of New York, No. 96. Civ. 8414(CBM), 2002 WL 32068971(S.D.N.Y. 2003)

G. Britz, Von der elektronischen Verwaltung zur elektronischen Verwaltungsjustiz, DVBl, 2007

Hanns Prütting, “Auf dem Weg vo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r Videokonferenz – Einkleiner Schritt auf dem Weg zum elektronischen

Gerichtsverfahren”, AnwBl 5/2013

Heinz Wöstmann, in: Saenger (Hrsg.), ZPO–Handkommentar 3.Aufl, 2009, § 128a, Rn. 1;Baumbach/Lauterbach/Albers/Hartmann, ZPO, 66.Aufl., 2008

H. Prütting, “Auf dem Weg vo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zur Videokonferenz – Einkleiner Schritt auf dem Weg zum elektronischen Gerichtsverfahren”, AnwBl 5/2013

<https://courttechnologyconference.org/>

<https://justizministerium.hessen.de/presse/pressemitteilungen>

Jeremy Barnett, “The United Kingdom”, 12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2004

Julia Hörnle, “Online Dispute Resolution – The Emperor’s New Clothes? Benefits and Pitfall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http://www.bileta.ac.uk/02papers/Hörnle.html>)

J. Owen Forrester, The History of the Federal Judiciary’s Automation Program, American University L. R. 1996. 6.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1995. 12. 15.

Marc Chase McAllister, “Two–Way Trial Testimony and the Confrontation Clause: Fashioning a Better Craig Test in Light of Crawford”, 34 FLA. ST U. L. R., 2007

Martin Davies, “Bypassing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of the Use of Video and Audio Conferencing Technology in Transnational Litigation”, 55,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12

MDL No. 551, 1988 WL 525314 (W.D.Wash.8/9/1988)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Briefing Papers: Videoconferencing,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1995 (<http://cdm16501.contentdm.oclc.org/cdm/ref/collection/tech/id/532>)

Norris v. Shiley, Inc., No. Civ.A. 97–1953, 1999 WL1487499(W.D. Pa., 1999)

Parkhurst v. Belt, 567 F.3d 995(8th Cir. 2009)

Tammi Flythe, “The Courtroom 21 Project: A Light at the End of the

Legal Technology Tunnel”,
(<http://technology.findlaw.com/articles/01057/009999.html>)
Uwe Berlitz, “E-Justice - Chancen und Herausforderung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JurPC Web-Dok. 171/2007
William A. Geller, “Police Videotap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Issues and Practices, 1992
Warren Moy, “Use of Interactive CCTV to Provide Legal Counseling Services in Philadelphia”, MITRE Technical Report, 1973
WM. & MARY BILL RTS. J. 887, 2004
小田敬美, “訴訟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機器の利用”, 現代裁判法大系[第13巻—民事訴訟] 西口元 編, 新日本法規, 1998
ご存じですか? 民事裁判でのテレビ会議・電話会議, ‘テレビ会議システムの活用’, “医事関係訴訟や建築関係訴訟等、専門的な知識が必要な訴訟では、専門家か専門委員として手続に関与する場合がありますが、ここでもテレビ会議システムや電話会議システムをお使いすることができます。[民事訴訟法92条の3]”
(<http://www.courts.go.jp/saiban/wadai/2009/>)
門口正人(代表編集), 民事証拠法大系 [第3巻] 各論(1) 人証, 青林書院, 2003.